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4년 6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재정·조세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006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기획재정부	007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기획재정부	008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기획재정부	009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010
입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011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기획재정부	012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문화체육관광부	01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01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	0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세청	0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국세청	017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018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019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조달청	020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조달청	021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조달청	022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조달청	023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조달청	024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특허청	025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금융위원회	0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027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028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	029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금융위원회	030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031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금융위원회	032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금융위원회	033
실시간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034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금융위원회	035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036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037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038

02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교육부	042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043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교육부	044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교육부	04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여성가족부	04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047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여성가족부	048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049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3 보건·복지·고용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057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	058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05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060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보건복지부	06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062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0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06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065
체불사업주 응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066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고용노동부	06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고용노동부	068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69
함께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7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07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72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073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074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75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076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	077
유형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질병관리청	07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4 문화·체육·관광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외교부	08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외교부	083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084
「미술진흥법」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085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086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087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국가유산청	088

05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	095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환경부	096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환경부	09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	098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환경부	099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환경부	100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환경부	101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환경부	102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환경부	103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	10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깍’ 제외	환경부	105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106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해양수산부	107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기상청	108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10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기상청	110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기상청	111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기상청	112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2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1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25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12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127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128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29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130
중동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131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32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133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134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바다 GPS 위치 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해양수산부	135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해양수산부	13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양수산부	137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13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해양수산부	139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	14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41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42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143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144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145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특허청	146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특허청	14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특허청	148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특허청	149
모바일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150



07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	153
공간혁신구역 시행	국토교통부	154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국토교통부	155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국토교통부	156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국토교통부	157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158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159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160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대형 의뢰	국토교통부	161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국토교통부	162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토교통부	163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국토교통부	164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국토교통부	165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림)	국토교통부	166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게 가까이(《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국토교통부	16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168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169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170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국토교통부	171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국토교통부	172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	173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17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175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176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해양수산부	177



08 농림·수산·식품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85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87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88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89
고병원성 시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	19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191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4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5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196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97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98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99
김치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0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2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농림축산식품부	203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4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5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206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쌀가공산업법」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7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8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9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산업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21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11
국내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12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	213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해양수산부	214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해양수산부	215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216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해양수산부	217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해양수산부	2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219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220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시간 조기 확보	산림청	22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	222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산림청	223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산림청	224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산림청	225
생성형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226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227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농촌진흥청	228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농촌진흥청	229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9 국방·병무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국방부	233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카드’ 출시	국가보훈부	234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등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	23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병무청	236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병무청	237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238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병무청	239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병무청	240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병무청	241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방위사업청	242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43

10 행정·안전·질서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법무부	25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법무부	252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253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	254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	255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256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해양수산부	257
바다내비 해양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25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259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해양수산부	260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관세청	261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강화 시행	관세청	26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경찰청	26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경찰청	264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경찰청	265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근거 마련	경찰청	266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경찰청	267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찰청	268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경찰청	269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소방청	270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소방청	27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해양경찰청	272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해양경찰청	273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해양경찰청	274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해양경찰청	275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	276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77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78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79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280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28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2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006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007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008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009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010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011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012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042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043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044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045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11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119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120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121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250

외교부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08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083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25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252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253
출생통보제 도입	254



국방부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233
-------------------------------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255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56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013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084
「미술진흥법」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085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086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014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185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187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188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189
고병원성 시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19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191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92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19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194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5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196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197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198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99
김치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200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제한 완화	201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202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203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204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205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206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207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208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209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산업 경쟁력 제고	21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211
국내 수출업체 애로 해소 창구 마련	212



산업통상자원부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12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1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125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12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127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128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129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130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131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132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133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134

보건복지부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057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058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05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060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06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062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063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095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096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09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098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099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100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시행	101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102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103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10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105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064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065
체불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066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06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068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04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047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048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049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153
공간혁신구역 시행	154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155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156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157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158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159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160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대행 의뢰	161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162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163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164
인천공항 4단계 건설	165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166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16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168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169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170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171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172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173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17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175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015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087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106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107
바다 GPS 위치 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135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13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137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13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139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140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176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간합작 물류센터 확대	177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213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214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215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216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217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2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219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220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257
바다내비 해양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258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259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26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141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142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3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카드’ 출시	234
-------------------------	-----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069
함께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07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07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072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073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074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075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0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017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018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019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261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262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020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021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022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023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024

통계청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076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144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등 마약류 검사 실시	23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236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237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238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239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240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241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242
미래국방기교기술개발사업 신설	243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6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264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요청	265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근거 마련	266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267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268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269

소방청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270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271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시간 조기 확보	22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222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223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224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225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025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145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146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14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148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149

기상청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108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10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110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111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112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

생성형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226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227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228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229

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272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73
해상고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274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275

국가유산청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088
-------------------------------	-----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077
유행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07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276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277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278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279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0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02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028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029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030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031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032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033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034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035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036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037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03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150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280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28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282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007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기획재정부	009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010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011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문화체육관광부	01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0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세청	0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국세청	017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018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019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조달청	020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조달청	021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조달청	023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조달청	024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금융위원회	0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027
상장회사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031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금융위원회	035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03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교육부	042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047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057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05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060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0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064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06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상 합리화	고용노동부	068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69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07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72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질병관리청	078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외교부	082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084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085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	095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	098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환경부	100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환경부	102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	10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환경부	105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106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산업통상자원부	12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1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25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126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29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과금 한시적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13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해양수산부	139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42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143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144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특허청	14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특허청	148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150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국토교통부	156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국토교통부	157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158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국토교통부	161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국토교통부	162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국토교통부	16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168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176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87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2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3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5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97
김치 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0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7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해양수산부	214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해양수산부	215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216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해양수산부	217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	222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산림청	223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산림청	224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산림청	225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국가보훈부	234
입업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	23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병무청	236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병무청	237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238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병무청	239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병무청	241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방위사업청	242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43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법무부	251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253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	254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해양수산부	25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관세청	26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경찰청	263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266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소방청	271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해양경찰청	274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금융위원회	032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금융위원회	033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금융위원회	038
체불사업주 응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066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75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환경부	096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127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128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130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131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32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133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저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양수산부	13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41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145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특허청	146
승계철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특허청	149
공간혁신구역 시행	국토교통부	154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159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국토교통부	16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175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87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4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병무청	240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관세청	262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찰청	268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경찰청	269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	276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77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7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9월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03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037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04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여성가족부	046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여성가족부	048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보건복지부	061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고용노동부	067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국가유산청	088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138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98
생성형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226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	255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경찰청	265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경찰청	267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해양경찰청	273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해양경찰청	27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2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028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073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환경부	101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환경부	103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해양수산부	107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기상청	1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기상청	110
산업분야 주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기상청	112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89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	190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경찰청	264

11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환경부	097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환경부	099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109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	153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국토교통부	165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해양수산부	218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국방부	233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25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2월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074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087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기상청	111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해양수산부	135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	140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국토교통부	155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국토교통부	172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227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농촌진흥청	229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256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259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소방청	270

기타

2024년 상반기 기 시행되었거나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잠정, 날짜 미정 등)

상반기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 」 출범	기획재정부	008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기획재정부	01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	015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조달청	022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	029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금융위원회	030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교육부	044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049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	05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	077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외교부	083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해양수산부	136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국토교통부	166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169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196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조건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201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농림축산식품부	203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206
국내 수출업체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12
종이 형태 여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	213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산림청	221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농촌진흥청	228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법무부	252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해양수산부	260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280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281
하반기		
공급망안정화자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기획재정부	007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특허청	025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교육부	045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063
함께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70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076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086
주거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160
공동주택 내 로봱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토교통부	163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170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국토교통부	171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	173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174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해양수산부	177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85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99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2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4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5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8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9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21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219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220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해양경찰청	272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78

<https://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6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그간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09:00~15:30까지였습니다.



변경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00~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0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7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시행일: 2024년 하반기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 ①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③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④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시행일: 2024년 6월

기존

- 그간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변경

- 향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관의 경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더불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기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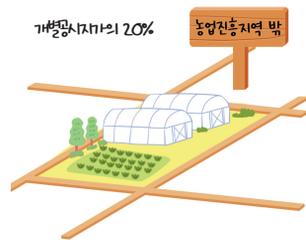
* 농업진흥지역 안 30%(최대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30%(최대 5만원/㎡)



변경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 30%(최대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20%(최대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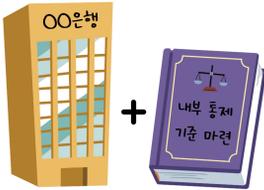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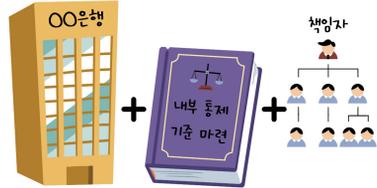
기존

-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만 부과했습니다.



변경

- 기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에 더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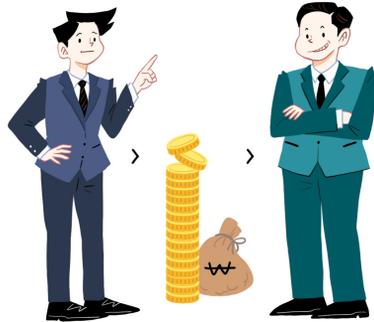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직접 요청 가능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 044-215-4714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

❖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한눈에 보는 정책>외환시장 구조개선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추진배경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 추진

주요내용 •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044-215-7881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 ❖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¹⁾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²⁾ 및 경제안보서비스³⁾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 1)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원재료(부처 지정)
 -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서비스·기반 시설(부처 지정)
- ❖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보도자료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및 (보도자료)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추진배경**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기금의 출범 및 자금지원 개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044-215-2991)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https://econedu.go.kr>)’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추진배경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정부·공공·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 연계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개인 연령·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강화
 - 경제교육 교사,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채널 제공

시행일 2024년 6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공 주체) 관세청
-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3. 1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팀(☎ 044-215-4151)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 ❖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추진배경**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 주요내용**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044-215-7871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4년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추진배경**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예정(6. 27.)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개편
- 주요내용**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품목 개수 확대 및 안정화 지원 강화
- 시행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024. 6. 27.)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1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추진배경**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구분	당초	개편
면제 기준연령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12세 미만 면제
부과금액	공항 1만원, 항만 1,000원	공항 7,000원, 항만 1,000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지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8)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납부금액	기존	개선
2억원 이하 (38.2%)	2회 이하	3회 이하
2억원 초과 (61.8%)	3회 이하	

참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5. 3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추진배경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9)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세법」 제106조의9 ①항).

* (중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

❖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

참고

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제도개요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추진배경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7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7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2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배 상향(2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간소(57개 → 27개)한 간이수출 신고가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이므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
- ❖ 2024년 하반기부터 4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개정·적용

- 추진배경**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 주요내용** 그간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5)

기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합니다.

❖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하지만, 「인지세법」 및 「민법」에 따르면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지침

추진배경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주요내용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 042-724-7209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도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추진배경**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042-724-7411)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042-724-7339)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 유튜브(YouTube)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1

- YouTube 채널 “(조달청) 바른조달심사”
-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대형공사 심의과정 공개, 공정성 의심은 벗고, 부정행위 원천 차단

참고2

- YouTube 채널 “(조달청) 공공주택 심사마당”
-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조달청, 투명한 「공공주택 심사마당」 본격 운영

주요 대형 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추진배경

건설사업 심사제도의 특성상,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커 부정한 청탁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책임감·신뢰도 높은 심사 유도 필요

주요내용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

시행일

2024년 6월(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042-724-7203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 (기존) 연 4회 공모, 특허요건 필수 → (개선) 상시 공모, 시급성·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요건 완화
- ❖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추진배경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주요내용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및 신청요건 완화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41

2024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기존에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의 상용SW도 중소제조 상용SW와 동일하게 제3자단가계약(수의)을 체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 앞으로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 SW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쟁합니다.
- ❖ 중소제조기업은 이전과 같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추진배경 중소제조 SW기업 보호 및 SW산업 기술성 경쟁 강화

주요내용 (계약대상) 외산·대기업·중견·중소공급 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 SW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

시행일 2024년 7월 1일(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2024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에 소액납입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소액납입제를 도입하여 월 10~20만원의 소액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에는 부금월액(30~1,000만원)·부금총액(1,500만원~5억원)으로 운영

❖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근거 마련

추진배경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일 2024년 하반기(예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24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시행 후 6개월 전(2025. 1. 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 7. 18. 제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주요내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2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 주요내용**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간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4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 록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 ❖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합니다.
-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12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 (2024. 4. 8.~5. 20.)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추진배경**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약속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 시행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4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형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 ❖ (편의성 확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고
- ❖ (정확성 제고)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 ❖ (접근성 강화)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추진배경**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6월 30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024. 1. 2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¹⁾·주요주주²⁾)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³⁾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 확정

** 시행일 이후 30일(잠정)간(2024. 7. 24.~8. 22.)은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

동 제도를 통해 추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어,

❖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추진배경**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주요내용**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30일(잠정) 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 (금감원·거래소)하도록 의무 부과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그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됩니다.

- (진입)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 (퇴출)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소비자보호법령」(벌금형 이상)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02-2100-2974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통장협박*으로 검색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추진배경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주요내용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00-2992)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김소영 부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고금리 시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 절감
-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2024년 9월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1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합니다.

- ❖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자금 위주) 수요가 있는 경우
-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Delta 0.8\sim\Delta 1.0\%p$, 중소·중견 $\Delta 1.2\sim\Delta 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추진배경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신설)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대해 시중 최저수준 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로 확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과 함께 신규펀드 8,000억원을 추가 조성(총 1.1조원)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생태계펀드도 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5

지난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 ❖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우대금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추진배경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시행되었고,

❖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주요내용**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4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됩니다.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상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금번 변경 사항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추진배경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시행일 2024년 8월 7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이자면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변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0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4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기준

-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제재조치에 어려움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변경

- 이행명령→제재조치
*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가능



이행명령



제재조치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기존

- 서울·부산·인천 등 6개 시도



변경

- 전국 17개 시도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 ❖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 등록금대출은 현재의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생활비대출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606)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20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추진배경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주요내용 희망하는 초1 누구나 이용, 초1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 해소

시행일 2024년 9월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 044-203-719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의 시행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 이에, 교육부는 그간 이원화 체제로 초래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12. 8.)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추진배경 모든 영유아(0~5세)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95)

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학교 업무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인력·예산 및 시·도별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의 범위·정도의 차이가 있어,
- ❖ 2024년 하반기부터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학교지원 전담기구 기능 확대

- 추진배경**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 주요내용**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 시행일** 2024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또한,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이행관리원 독립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양육비 이행 강화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의 절차 간소화*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설립
※ 양육비 이행지원 문의: 1644-6621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7)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사업입니다.
- ❖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 운영기관: (2023년) 6개소 → (2024년) **17개소**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내년 스톱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추진배경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7. 18.)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주요내용

-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 ※ 스톱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문의: 국번 없이 1366

시행일 2024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 ❖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고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 개정 내용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추진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이 학업 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꿈드림센터(2024년 222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06)

개별 상담소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복합피해 등 고난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2개 시도(부산·경기)에서 5개 시도(부산·경기·서울·대전·울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에 '1366 통합지원단'을 설치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고난도 피해사례에 대한 원스톱 지원,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목적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 해소

주요내용 통합사례관리 제공,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중대 사건 총괄 등

추진 체계 • 중앙 기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광역 기능은 1366센터에서 수행



- (지원 사례) (가정폭력, 성폭력 복합 피해자)
 - ①긴급보호 지원(1개월),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②가족 분리,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지원, ④사후 모니터링

시행일 2024년 2월부터 확대 시행 중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0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57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1회당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0월 예정)



0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58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시행일: 2024년 6월(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를 선정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변경

- 2024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0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6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지원



변경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



0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65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체불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기준

-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용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변경

- 하반기부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용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기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소)에서 급식·영양관리를 지원해왔습니다.



변경

-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로 확대 설치되어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영양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228개소)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시행일: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존

- 함께한걸음센터* 3개소(서울, 부산, 대전) 설치
- * 센터는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

-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7개소로 확대됩니다.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4년 7월 21일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상품목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의 총 39개 품목

확인방법

- 표기 대상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
-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7)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입니다.
- ❖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대상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참고]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제공기관) 심리상담인력을 채용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9)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추진배경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시행일 2024년 6월(지자체별 상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6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2022. 8.~) 39개 시·군·구 → (2024. 7.~) 229개 시·군·구

❖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예)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가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배경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 발생 증가 추세,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주요내용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044-202-3429)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됩니다.

-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을 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할 경우

-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추진배경**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 증가 우려
- 주요내용**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9, 3898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가 이제는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SNS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 그동안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으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이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 긴급 번호 109에서 모두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 ❖ 이제 9월부터는 청년층 등이 익숙한 SNS도 새로운 상담 창구로써 개통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관련 보도자료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 추진배경**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합 개편(109)의 일환으로 전화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창구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 청년층 등이 익숙한 메신저,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자살 예방 SNS 상담 창구로써 새롭게 개통
 -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와 동일하게 주요 상담 창구로써 운영
- 시행일** 2024년 9월 10일(예정)
* (참고)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44-202-3537)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 ❖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보도자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추진배경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증상 및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 실시
 - (체계적인 치매 관리)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환자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에 따라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치료·관리

시행일 2024년 7월 말 22개 시·군·구

*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요양시설 침실 분포: 1인실 3.3%, 2인실 19.6%, 3인실 22.4%, 4인실 54.6%

-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개선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입소 어르신들은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받으실 것과 동시에 사생활 또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유니트케어형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베이비부머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인구) 진입 등으로 요양시설에 대해 요구가 달라져 새로운 요양시설 모델 개발이 필요
- 유니트 개념**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단위인 유니트를 단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 모델
- 주요내용**
 - (시설) 침실 전면 1인실화 및 정원 1인당 최소 면적기준 10.65㎡로 강화, 공동거실과 침실의 중정형 배치를 통해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 및 상호 간 교류 활성화 유도
 - (인력)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축소를 통해 강화된 돌봄을 제공하며,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시행일** 2024년 7월~2025년 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 044-202-7477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체불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2024년 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용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불사업주 용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하여

*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 ❖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 제출 부담으로 용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안
A.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A. 삭제
B.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B.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2024. 1. 9.)

체불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추진배경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 노력 지원

주요내용 사업주 용자제도의 요건 중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여 임금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용자신청 및 실행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09)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합니다.

- ❖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재직자·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현장 맞춤 훈련(OJT)을 실시하고, 대학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주요사업>일학습병행>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운영기관 모집공고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추진배경**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
- 주요내용**
 - (운영기관) 공동훈련센터(전문대·4년제 대학)
 - (훈련대상) 전문대·4년제 대학교 유학생(2024년 기준)
 -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훈련비
 - (추진현황) 외국인 유학생 운영기관 모집 공고(2. 29.) → 운영기관 선발(6월) → 훈련 시작(9월)
- 시행일** 2024년 9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추진배경 안전보건대장 간소화

주요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간소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구체화 및 시점 명확화,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제출 기한 명확화 등

시행일 2024년 7월 중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및 질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와 조리원 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3년) 68개소 → (2024년) 114개소 → (2026년) 전국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영양지원 강화

사회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 확대

추진배경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2. 7. 28.)

주요내용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68개소 → 114개소, 2024. 7.-)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공급과 식품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2

2024년부터 **함께 한걸음센터***가 전국 17개소로 확대됩니다.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로운 이름으로, 첫 번째 도전이나 전진을 함께하고 '마약류 예방·재활사업을 통해 마약청정국으로의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

❖ **함께 한걸음센터**가 2023년 3개소(서울, 부산 대전)에서 올해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됩니다.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재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내 중독자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추진배경 2023년말 **함께 한걸음센터**는 서울, 부산 및 대전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확대(14개소 추가) 설치 필요

주요내용 지역 내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굴 및 개입,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실시

시행일 2024년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734)
의약품관리과(☎ 043-719-2656)

7월부터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 (대상품목)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총 39개입니다.
- ❖ (확인방법) 대상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로 제공되는 '제품명'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 돌기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용기 등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의약품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 간편검색서비스 바로가기 설치 및 실행(의약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참조)바코드 스캔)제품정보 확인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제공 의무화

- 추진배경** 장애인이 의료제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제공
- 주요내용** 표시 대상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 영상을 통해서는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제공됨
*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 총 39개 품목
- 시행일** 2024년 7월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5)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 2024년 7월부터는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대상 전면 확대

추진배경 동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의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안전 강화 필요

주요내용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환자에 대한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대상** 전면 확대

* 부작용 정보: 부작용 명칭,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 대상: (2023년) 66개 성분 → (2024년) 235개 성분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26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별*로 의무적용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합니다.

* (1단계, 2021. 10.) 2019년 수입량 1만톤 이상→(2단계, 2022. 10.) 2020년 수입량 5,000톤 이상
→(3단계, 2023. 10.) 2021년 수입량 1,000톤 이상→(4단계, 2024. 10.)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식약처 누리집>보도자료>수입 배추김치, 해썬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HACCP 의무 적용

- 추진배경** 해외제조업소 배추김치 제조·가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다소비 수입식품인 배추김치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대상 HACCP 적용 추진
 - 해외제조업소의 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한 표준기준서 등 자료 배포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9)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신청서류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수출국정부 발행 다국어 증빙서류 심사를 담당자 육안(肉眼) 검토에서 문자인식(OCR)과 자동화 기술(RPA)을 적용한 디지털 검토로 전환합니다.
- ❖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민원신청 건 중 일부 국가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 ❖ 향후 적용 국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연간 4만여 건의 해외제조업소 민원신청 건에 대해 담당인력 3인이 육안(肉眼)으로 현지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한 초과(3일) 발생 및 부정확 우려로 디지털 기술 도입
- 주요내용**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서류 검토 시 외국어 번역·중복등록, 현지주소 검증 과정에 대한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자인식·번역) 해외 제조업소 현지 정부에서 발행한 원문 증빙서류를 문자인식(OCR)하여 영문, 국문으로 번역
 - (비교검토) 기등록 되어 있는 업소와 동일 또는 유사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등을 비교와 수출국가 증빙서류와 등록신고서간 비교 및 오타 여부 자동 검토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예정)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제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영문) 발급제도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자가 영업신고 여부, 국내생산실적 및 판매실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에 제출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 ❖ 수출 위생용품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는 위생용품 산업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추진배경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에 제출

주요내용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시행일 2024년 8월 7일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7(직업), 2204(보건))

(직업·건강분류) 노동시장과 보건 분야 변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1차 한국표준건강분류를 각각 개정하여 7월 1일자로 고시합니다(시행일 2025. 1. 1. 예정).

- ❖ 이번 직업분류는 2017년 7차 개정 이후 직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분류항목 분리·신설 109개, 통합 27개 등에서 개정되었습니다.
- ❖ 또한, 건강분류는 2016년 제정 이후 국제분류 및 최신 의학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25건의 코드정비와 2,451건의 용어 정비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표준산업, 직업, 건강분류 개정 고시

표준분류 작성 관련 규정

- 개정 근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 주요내용**
 - 통계 작성 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 고시 및 시행일**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 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29)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맞춤형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 ❖ 보건소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결핵환자의 진단-복약관리-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전문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 *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Public-private Mix, PPM)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PPM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17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
- ❖ 결핵은 치료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보도자료)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관리해드립니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 안내

- 추진배경**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관리 지원
- 주요내용**
 - 결핵환자 진단 시 약제감수성 검사 여부 확인
 -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 설정(맞춤형 복약관리)을 하고,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맞춤형 사례 관리)
 - 다제내성결핵환자 전문의료기관 안내, 사례관리회의 및 약제구성컨설팅 지원
- 시행일** 2024년 6월 1일(신고 건부터)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043-719-733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법정 서식이 신설됩니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유흥접객원 및 안마사술소 종업원 등은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을 받아야 함

- ❖ 기존에는 식품위생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 분야 종사자가 동일한 건강검진결과서를 활용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흥 분야 종사자의 경우 성매개감염병 항목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고 법정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 이에 7월부터는 유흥 분야 종사자 등이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개정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

추진배경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

주요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함

시행일 2024년 7월 30일(시행)

* 2024년 6월 30일(개정)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01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82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비용이 낮아집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	33,000원		
		26면	30,000원	-	-	30,000원		
	단수여권	5년 미만	26면	15,000원	-	-	15,000원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0원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0원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000원	0원	23,000원	



02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8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기존

-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변경

- 앞으로는 정부24 앱·웹뿐만 아니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행일: 2024년 12월(예정)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광역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로 12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94

(복성동1가)

(월미도 갑문 매립지)

주요구성 해운항만실, 해양교류사실,
해양문화실, 기획전시실 등

기대효과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체험장
구축, 약 110만 명 방문 예상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 ❖ 동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	-	33,000원	
			26면	30,000원	-	-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0원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0원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000원	0원	23,000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외교부 여권과(☎ 02-2002-0188)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게 되어, 대면 신청 시 대행기관을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
- ❖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참고 외교부 누리집)보도자료)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앱에서도 된다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 추진배경**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 및 민간기업의 융합서비스 창출
- 주요내용**
 - 정부24 앱·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가능
 -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
 -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
-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2)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이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여행업 관련 규제 한시적 완화

추진배경 여행업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추진

- 주요내용**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여행업 휴업통보 업체가 휴업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개선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국내여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여행업 휴업통보분부터
-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2024년 7월 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국내여행업 등록신청분부터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7월 26일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 올해 시행되는 주요 조문은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와 더불어,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합니다(고시안 별도 발표).

향후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긴밀히 청취하겠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지원 제도적 기반 도입

- 추진배경** 2023년 7월 「미술진흥법」 제정안 공포
- 주요내용**
 - (20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 (20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 (20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044-203-314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024년 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또한, 2024년 9월 27일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보도자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매크로 이용 판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주요내용** (과태료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시행일** 2024년 8월 7일(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2024년 9월 27일(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도록 강요한 자)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9)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와 가치, 해운항만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4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 ❖ 바다를 통한 문물교류와 확장을 보여주는 해양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세계 해운·항만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해양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요구성: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누리집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추진배경**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이 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주요내용**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양교류'와 '해운항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선보이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시행일** 2024년 12월(예정)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 042-481-4912

50년 미만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 ❖ 2024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합니다.
- ❖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유산청 누리집(새소식)보도/설명「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공포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추진배경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이었습니다.

 15,190원


변경

- 향후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7,600원으로 인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7,600원
(50% ↓)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행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성 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 해당 연도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최대 10% 내에서 차입 허용



-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한도내에서,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시 유연하게 할당 가능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11월

기존

-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권역)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

-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19개 권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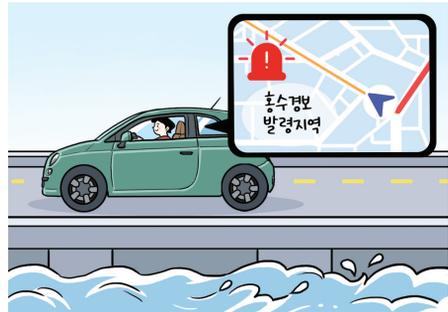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시행일(내비게이션 활용): 2024년 7월 4일

-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행일: 2024년 11월 30일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정성 정보 공개 예시(성분별(25개) 등급)

나뭇잎 개수로 표시	
정제수	5개
트리아세틴	4개
프로필렌글리콜	3개
차아염소산나트륨	2개

나뭇잎 개수 의미	
4개	유해 우려 없음
3개	유해 우려 낮음
2개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행일: 2024년 10월

기존

- (송출지역 단위) 지진 규모 기준의 광역시·도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50km 또는 80km) 이내 지역에 송출



변경

- (송출지역 단위) 진도 기반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세분화 제공
- (송출범위)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 II) 이상 지역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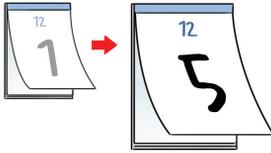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기존

- 기존에는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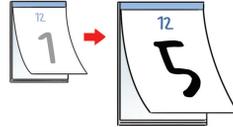


12월 5일 날씨

오전 0% 오후 8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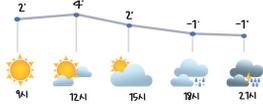
변경

- 향후에는 5일째 날씨정보를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 ※ 오늘~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12월 5일 날씨

-3/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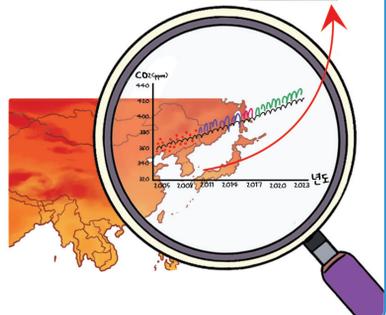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됩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기존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2개(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관측망: 55개소
서비스: 티맵, 카카오내비



변경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7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관측망: 259개소
서비스: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 ❖ 또한,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금번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감면

- 추진배경**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2)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성 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 ❖ 지난 2023년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 ❖ 유연성 제도가 도입되면,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할당된 총량의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등 총량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추진배경 총량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 주요내용**
- (차입)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양만큼 차입을 허용하되, 해당 연도에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
 - (상쇄) 총량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추가 할당 및 취소) 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할당 취소 등 유연성 도입
 - (예비분)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신규 사업장 할당 등의 목적으로 예비분 보유·사용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규정 관련 시행일(2025년 1월 1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7721)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에 제공합니다.
 - ※ 1단계(수도권, 2022. 11.) → 2단계(수도권·충청권·호남권, 2023. 11.) → 3단계(전국, 2024. 11.)
-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 추진배경** 환경 분야 국정과제 및 세부 이행계획에 기반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정보의 선제적·적극적 제공 체계 마련
 - ※ 국정과제 88-2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 → 2일 전 예보)
-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고농도($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조기 제공 대상 권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11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52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립니다.
 - ※ (안내문 예시) 이 지역은 홍수경보 발령지역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 추진배경**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추진
- 주요내용**
 - (내비게이션 활용)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위험지역(지하도로 등) 안전운전 유도
 - (안전안내문자)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하여 안내문자에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
- 시행일** (내비게이션 알림) 2024년 7월 4일
(안전안내문자) 2024년 5월 15일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 ❖ 올해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된 등급을 2024년 11월 1일 대국민 공개합니다.
- ❖ 향후 이번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시 : ○○세정제〉

① 전체 원료(25개) 성분 구성

■ 유해 우려 없음 □ 유해 우려 낮음 □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80%

12%

8%

② 성분별(25개) 등급

나뭇잎 개수로 표시	
정제수	
트리아세틴	
프로필렌글리콜	
차아염소산나트륨	

나뭇잎 개수 의미	
4개	유해 우려 없음
3개	유해 우려 낮음
2개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③ 사용상 주의 사항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배경 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

주요내용

-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단, 규제물질 필수 표기),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 표시
-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픽토그램 등) 제공

시행일 2024년 11월 30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24. 7.)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신고가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변경됩니다.

※ (기존) 설치 후 30일 내 신고 → (개선)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전 등) 신고

- ❖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각 시설이 재이용 계획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검토·반영하여 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제도 시행

추진배경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 후 신고토록 규정하여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필요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신고 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46)

2024년 10월 25일,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023. 10. 24. 제정).

- ❖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 ❖ 특히,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물순환 촉진구역)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관련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
- ❖ 아울러,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

추진배경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가뭄 및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인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 (물순환 실태조사)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조사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환경부 수도기획과 ☎ 044-201-7119

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또한, 해당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해당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및 유의사항

추진배경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저수조 위생조치(매월 위생점검, 반기 1회 청소, 연 1회 수질검사) 의무에 대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 강화

- 주요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시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을 대상으로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됩니다.

- ❖ 이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것에 더해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합니다.

* (수집·운반자) 차량의 GPS 위치정보/(처분 및 재활용업자) 반입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진입로, 계량대, 보관장)/(수출입자) 위치정보, 계량값 등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4년 9월까지 설치하고, 10월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송프로그램 설치와 시험작동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 제도 시행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우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분석해 배출량 신고 누락 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확대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주요내용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처리 또는 수출입할 때마다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자동 전송

구분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폐기물 수출입자	
	수집·운반하는 자	처분 또는 활용하는 자	수출하는 자	수입하는 자
차량 GPS 위치정보	○		○	○
폐기물 계량값		○	○	○
영상정보(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		○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 건설폐기물(2022. 10.) → 지정폐기물(2023. 10.)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2024. 10.)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됩니다.
-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기준 확대 추진
-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1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중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인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추진배경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에 따른 부담금 정비 추진(2024. 3. 27.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껌 품목은 과거와 달리 소비량(생산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종이에 싸서 버림)가 정착
- 껌 품목은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 및 부과 적정성 등 검토 결과 부과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4년 7월 1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5)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 ❖ 2024년 7월 24일부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가 행정처분 기준에 추가됩니다.
- ❖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강화
- 주요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추가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지정취소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68)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제공 등을 위해 2024년 10월에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됩니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2023. 10. 24. 제정)

- ❖ 법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 분야에 대한 ①관측망 구축·운영 확대, ②과학적인 감시·예측 및 감시·예측 정보의 신뢰성 제고, ③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 아울러 산재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여 민·관·연 등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감도를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4. 7)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추진배경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해양·극지분야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제공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주요내용

- 법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 분야 관측망 구축·운영,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본격 착수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민·관·연 전문가 및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3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체감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가 가능하도록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됩니다.

- ❖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반경(50km 또는 80km)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가,
- ❖ 지진 발생 시 지진동의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땅(지표면)의 흔들림 크기

- (송출지역 단위) 광역시·도 단위의 재난문자 송출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이내 지역에 보내던 지진 재난문자 송출범위를 국민 체감 진도를 고려하여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 II) 이상 지역으로 변경

참고 기상행정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③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추진배경 지진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송출지역 단위) 광역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세분화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 반경 이내 → 특정 진도 이상 지역

시행일 2024년 10월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시간 단위의 날씨정보를 4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하던 것을 2024년 11월부터는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예보의 변동성, 기상정보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날씨정보 제공 단위와 요소를 차별화하여 제공합니다.

❖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눈·비 예보는 국민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의 예상강수량 및 적설과 함께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정성정보 예시: 약한비, 보통비, 강한비, 보통 눈, 많은 눈

❖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오늘~4일째에 대해서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마지막 5일째 날씨정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참고 날씨누리(기상청 누리집) 및 날씨알리미(기상청 공식 앱)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일상생활 편의와 위험기상으로부터 사전 대비·대응을 위해 날씨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음

주요내용

- (기존) 5일째 오전·오후 단위, 강수유무 정보 제공
- (개선) 오늘~4일째 1시간 단위, 5일째 3시간 단위로 제공, 예상강수량 및 예상적설에 대해서는 정량정보와 정성정보 함께 제공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기상청 기후정책과 ☎ 042-481-7376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됩니다(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 ❖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촘촘한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와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여 관계기관과 공동활용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 아울러,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후변화의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법을 시행을 통해 과학적 증거 기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에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주요내용**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기상청 관측정책과(☎ 042-481-7341)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됩니다.

- ❖ 2024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에 대기상태, 노면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 ❖ 실시간 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에 3개 내비게이션社**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 (내비게이션社)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추진배경 도로살얼음,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실시간 도로위험기상정보 전달 필요

주요내용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2023년	2024년
관측망	• 노선: 2개(중부내륙선, 서해안선) • 관측망: 55개소	• 노선: 7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 관측망: 259개소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시행일 2024년 12월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42-481-7475)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다변화되고 있는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 특화 AP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 한곳에 모은 산업 분야별 특화 API를 서비스합니다.

- ※ (예) 1) 에너지 분야에는 일사량, 구름, 바람 데이터 우선 제공
- 2) 수자원 분야에는 강수량, 레이더 반사도 데이터 우선 제공

❖ 부가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관측, 예보 등 다양한 기상기후데이터를 사용자 수요에 맞춰 재조합하여 묶음형으로 제공합니다.

- ※ (예) 1)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별 실황분석-예측 데이터 묶음 서비스
- 2) 관측지점별 실시간 관측-과거 통계 데이터 묶음 서비스
- 3) 폭염, 황사 등 현상별 연관 데이터 묶음 서비스

참고 기상행정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⑧

필요한 기상기후데이터를 한번에, 분야 맞춤 API 서비스

추진배경 기상기후데이터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대응 기상정보 자원체계 구축 및 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가치 창출

주요내용

- (산업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 에너지(태양광·풍력), 수자원 등 사회·산업 분야별 특화된 데이터만 모은 API 서비스 시작
- (수요에 맞춘 묶음형 API 서비스) 관측, 예보 등 기상 부문 또는 관측장비 구분을 초월하여 사용자 수요에 맞춘 데이터 묶음형 서비스 운영

시행일 2024년 10월

- 서비스 제공: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기준

- (적용기한) '24. 8월 일몰 예정이었던 한시법
- (적용대상)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5개)
- (특례범위)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2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지원체계)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운영(대한상의, 서울 중구)

변경

- (적용기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6개)
- (특례범위)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6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지원체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7개 권역 순차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기준

- 지금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었습니다.



변경

-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합니다.

※ 1차) 2024년 7월, 0.5%p 인하(3.7% → 3.2%),
2차) 2025년 7월, 0.5%p 추가 인하(3.2%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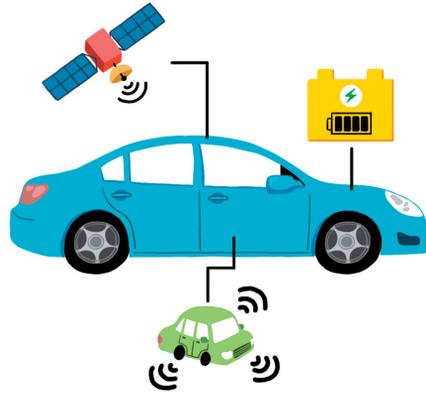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시행일: 2024월 7월 10일

- 미래차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시행일: 2024월 7월 10일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불가 •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일부 허용 *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 대상 제외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일부 허용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설립 신고 등이 완료된 자산에 한함

매매·임대 제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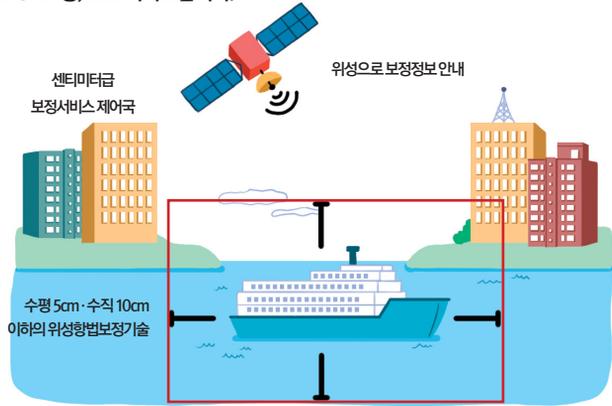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시행일: 2024년 12월

- 해양에서 이용 가능한 수평 5cm·수직 10cm 이하의 위성항법보정기술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부터 지상기반 통신망(LTE·DMB·UHD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 위치오차 10m → 5cm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기존

- 그간 중소기업이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분류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변경

-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3배→5배)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기존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권고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 시 강제 불가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없음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있음



변경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마련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개선
 -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절차 마련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 044-202-6871)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되어 2024년 11월 시행됩니다.

- ❖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예시)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無 GPS 양자항법 등
- ❖ 본 제정법 마련을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보도자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추진배경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종합진흥)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
 - * 양자원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냉동기, 레이저 등)
 - (중장기정책)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등
 - (연구·산업 허브)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 구축
 - (전주기적 인력양성) 신규인력 양성과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국제협력)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조성 등을 위해 가상융합사업자와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는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추진배경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산업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제19조) 등
 - (자율규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환경조성 등을 위한 협회의 설립(제18조) 및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추진근거(제27조) 마련
 - (임시기준)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계부처가 법령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 도입(제28조, 제29조)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증 의무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

❖ 2424년 7월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인증항목, 비용으로 완화된 부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항목: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도입시행

추진배경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나, 많은 인증항목,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주요내용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경량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시행 - 적용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7)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022. 10. 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개정 지침은 배터리실 및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토대로 2024년 하반기(7월)부터 사업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민들의 디지털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행정규칙)「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주요내용

- 추진배경**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 대형재난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주요내용**
 - (재난 예방·대비 강화)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개선(계측주기 10초 이하 관리), 추가적인 재난 사전탐지체계 병행 구축, 배터리실 내 전력선 등 타 전기설비 설치 금지, 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및 단계적 차단방안 수립, 배터리·무정전전원장치 등 예비전력설비 이중화 체계 구축
 - (재난 대비 역량 재고) 시설보호·업무연속성계획에 재난 시 구체적 전력유지 및 설비운용 방안을 포함하고, 재난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등
- 시행일** 2024년 6월 1일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44-203-4231)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신기업활력법**」이 시행됩니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0 개정, 2024. 7. 17 시행).

-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 (기존) 5개 유형(공급과잉 해소·산업위기 지역 대응·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 → (개선) **6개 유형(기존+공급망 안정)**
- ❖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합니다.
 - ※ (상법)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oneshot.or.kr)에서, 신청 방법과 주요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 지원제도 보강

추진배경 AI 부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 주요내용** 「기업활력법」 적용기한·대상·특례범위·지원체계 대폭 보강
- (적용기한) 한시법(前: 2024. 8. 일몰)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
 -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변경) 기존+공급망 안정
 - (특례범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 보강
 -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등 참여)를 구축하여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

시행일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2)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024년 7월부터 인하합니다.

-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합니다.
- ❖ 2차례에 걸친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기대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추진배경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기금의 수입·지출 및 여유재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요율 조정 필요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
* (1차) 2024년 7월, 0.5%p 인하(3.7% → 3.2%),
(2차) 2025년 7월, 0.5%p 추가 인하(3.2% → 2.7%)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044-203-43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 ❖ 정책 대상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두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육성을 지원합니다.
 -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HW에서 미래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SW까지 확장하였습니다.
- ❖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중장기 계획인 미래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설치합니다.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표준화 및 인증,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지방투자, 사업재편, 유턴에 대한 지원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참고자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추진배경**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 지원 필요
- 주요내용**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산업집적법」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추진배경**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주요내용**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그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 ❖ 2024년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를 유예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 설정

- 추진배경**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시행일** 2024년 8월 7일(「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태양광발전소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을 때 태양광 패널에 의해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 이에 2024년 8월 7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하게 해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기공사업법」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추진배경 태양광 패널 해체 시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시행일 2024년 8월 7일(「전기공사업법」 개정 시행)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2

정량표시상품 관리 의무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는 의무제도와외의 차별성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에 따른 인증기업 감소로 인해 폐지(2024. 7. 10.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0일부터 K-마크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은 할 수 없습니다.
- ❖ 반면, 정량표시상품 27종에 대한 관리제도는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현황

정량표시상품 표시의무제도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량표시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는 법정 의무제도임

정량표시상품 표시의무 대상 27종(「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냉동품, 가공품 포함)
2. 콩류(가공품 포함)	16. 해조류(냉장한 것, 말린 것, 가공품 포함)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 곡류가루(가공품 포함)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4. 전분류	18. 소스류(소스, 스프류 및 드레싱 포함)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 포함)	19. 간장 및 식초
6. 과실류(가공품 포함)	20. 조리식품(즉석, 냉동, 냉장식품, 통·병조림 포함)
7. 설탕(포도당, 과당,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 포함)	21. 조미 반찬류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 포함)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 제외)
9. 향신료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 한정)
10. 면류	24. 윤활유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포함)	25. 도료(유·수성도료, 라카, 도료용 신나 포함)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26. 합성세제(세정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포함)
13. 꿀	27. 위생용품·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 포함)
14. 우유(유가공품 포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

추진배경 정량표시상품 의무제도와외의 차별성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감소로 인해 제도 폐지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관리 의무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 삭제

시행일 2024월 7월 10일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6)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그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이 2024년 8월부터 확대됩니다.

- ❖ 2024년 8월부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공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 주요내용**
 -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
 -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 우선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지방이전기업 우대) 융복합단지로 입주하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설비보조금 등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연장

- 추진배경**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 주요내용**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
* 2024년 12월 일몰 예정
- 시행일** 2024년 8월 1일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석유제품을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 변경 없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서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 센터’도 석유관리원 내에 신설하고,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탄소 감축,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유 정제공정에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를 투입 가능하게 되어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주요내용 •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서 「석유사업법」에 명시
•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 금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추진배경** 산불 등 대형화재 진화 시 소방현장 주유 관련 불편 발생
- 주요내용**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 ❖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톤당 16,730원으로 인하*하며,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당초) 24,242원/톤 → (변경) 16,730원/톤(△30%)
- ❖ 시행일(2024. 7. 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인화된 수입부과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7월 1일부터 전력기금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인하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3호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추진배경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

주요내용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외)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원/톤 → 16,730원/톤으로 한시(2024. 7.-2025. 6.) 경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시행일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수로측량, 스마트 항만 등에 핵심 요소인 고정밀(5cm급) PNT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상에서도 자율운항선박, 무인선과 같은 해양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PNT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 (P.N.T) Positioning(위치 획득),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용 가능한 수평 5cm·수직 10cm 이하의 위성항법보정기술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부터 지상기반 통신망(LTE·DMB-UHD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 본 서비스는 자율운항선박/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수로측량, 준설, 플랜트 건설, 해저케이블 부설, 해양드론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상기반 통신망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2035년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통해서도 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오차범위 10cm 이하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개발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추진배경 해양 PNT 서비스의 정밀도·신뢰성 강화를 통해 선박항해 안전과 해양 분야 4차 산업화를 안정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해양에서 고정밀·신뢰도 높은 측위가 가능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지상기반통신망(LTE 등)으로 제공

시행일 2024년 12월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앞으로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컨설팅부터 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컨설팅, 금융, 보조금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 받아야 했습니다.
- ❖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내 친환경선박 도입 One-Stop 지원 T/F를 통해 상황 진단부터 금융·규제·시황 컨설팅, 정부 보조, 정책금융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One-Stop 지원

추진배경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정책 지원 편의성 개선

- 주요내용**
- (수요 발굴) 해양진흥공사가 선사에 선박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선사의 친환경선박 수요 발굴
 - (컨설팅) 선박금융, 친환경규제 대응, 시장정보 제공 등 선사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 구조화) 선사별 요구사항에 맞춰 정책금융(투자, 보증 등), 보조금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선사에게 최적의 금융 패키지 제안
 -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가능 시, 신청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 지원
 - (금융) 정책금융기관(해양진흥공사 등)의 금융 시행 전 과정 지원

시행일 2024년 6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선박에 한정하여 시행되었던 친환경 인증제도가 기자재까지 확대됩니다.

※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기자재 사용 시 선박 인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선박은 건조·개조 시 보조금 등 지원

- ❖ 또한,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에는 정부가 공인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 인증제도 확대·개선 사항은 2024년 8월경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고시 개정 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추진배경**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제도 확대·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인증제도 확대) 기존 선박에만 시행하던 친환경 인증제도를 기자재까지 확대하여 시행(선박 → 선박 + 기자재)
 - (인증 마크)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이나 기자재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시행일** 2024년 8월(잠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이후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시설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과 함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를 실시합니다.

-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적용 확인제도’의 세부 절차(확인기준, 절차, 확인서 서식 등)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시설을 개발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거쳐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 등 조달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추진배경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확인제도 마련

주요내용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조달특례 지원 대상에 포함*

* 수의계약 허용, 공사 입찰 시 가점 인정 등 지방계약법 개정 원료,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

시행일 2024년 9월 15일(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제도 체계 마련)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5)

선박 안전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관리를 대행하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2년간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검색(항로표지법 시행령)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 추진배경**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로 기업부담 경감
- 주요내용**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 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확보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
- 시행일** 2024년 7월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항만배후단지에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배후단지에는 전기판매업(전기차 충전소) 및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수소차 충전소)이 입주할 수 없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 ❖ 2024년 12월부터 입주업종이 확대*되어 배후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입주자격)에 전기판매업(전기차 충전소),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수소차 충전소) 추가 예정(2024. 12.)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배후단지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보도 예정)

항만배후단지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 추진배경** 물류환경 변화(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확대)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입주업종 확대) 1종 배후단지에 전기판매업,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입주를 허용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 시행일** 2024년 12월(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일부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45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습니다.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유예 불가한 경우를 旣규정: ①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②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등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알림서식)(보도자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있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태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 주요내용**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5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4-204-7766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합니다.

- ❖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 수출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2024. 5. 8.)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추진배경** 글로벌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현지화 촉진을 위해 해외 시장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주요내용**
 - (시장조사·분석) 글로벌 시장경쟁력 분석 및 전략 도출을 통해 해외시장 현지화 또는 다변화 성공 가능성 제고
 - (R&D) 시장조사·분석 결과 활용하여 목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 (현지 사업화 실증) 실제 해외진출국에서 개발기술(제품) 검증 및 적용 효과 확인을 위한 실증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초(사업공고 예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7. 17. 시행)에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유효기간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상 등의 종합적인 정부지원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배경**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근거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
- 주요내용**
 - (요건 및 기준)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유효기간 등
 - (지원사업)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
 - 구체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2(산업))

(산업분류) 2017년 10차 개정 이후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 개정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7월 1일에 시행한다(고시일 2024. 1. 1.).

❖ 이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등 산업

** 콩나물 재배, 타이어 재생, 사진 및 영상기, 전자악기 제조, 복사업 등 산업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표준산업, 직업, 건강분류 개정고시

표준분류 작성 관련 규정

개정 근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주요내용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고시·시행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8181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됩니다.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 또한,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해킹 등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 벌금형을 기존보다 3배 강화, △법인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삭제·훼손 처벌 강화,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도입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시행

추진배경 특허권,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3배→5배)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8181

2024년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 △타인의 유명상표, 상호 무단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수량·품질 등에 대한 오인행위,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무단 사용, △상당량 축적된 거래목적의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등을 조사

또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 이에 따라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제도 및 행정조사 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 추진배경**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가 신설되며, 조사기록 법원송부절차 개선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8181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 이는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등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처벌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 2017~2023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년 → 20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

❖ 특허청과 대검찰청의 양형기준 개정 노력*,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개정(2024. 3. 25.)한 것입니다.

* (2023. 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
(2023. 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영업비밀 유출범죄 관련 강화된 양형기준 시행

추진배경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

주요내용

- 영업비밀 침해범죄 권고형량 상향
 - ※ 해외유출 기준 9년 → 12년, 국내유출 기준 6년 → 7년 6개월
-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 기준 수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됩니다.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사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으로,
 - ※ (2023년)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 접수, 평균 66일만에 사건 처리,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
- ❖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 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반도체 배치설계권까지 확대하는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 추진배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여 통·폐합
- 주요내용**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보유하던 배치설계권에 관한 심의 및 조정기능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로 이관
-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그간 사용자(기업 등)는 직무발명의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더라도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직무발명의 승계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가 실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기업과 종업원이 상생 협력하는 직무발명 법 개정으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추진배경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승계절차 간소화)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 도입시에도, 모든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 → 승계하지 않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 간소화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가능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

- 시행일**
- (승계절차 간소화)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부터
 - (인증 유효기간 연장) 2024년 8월 7일~2026년 8월 6일간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 기업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반과(☎ 02-2110-1521)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가 임시허가(2년)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편, 기존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는 법 시행일(2024. 7. 24.)로부터 1년 이내(~2025. 7. 24. 이내)에 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적 서비스 상시 제공

추진배경 그간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제공해오던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의 상시 제공

주요내용 기존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의 형태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법 개정으로 임시허가(2년) 후 유효기간 종료 시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불확실성 및 불편이 해소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존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는 법 시행일(2024. 7. 24.)로 부터 1년 이내(~2025. 7. 24. 이내)에 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시행일: 공모는 6월, 선정은 11월

-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평가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6월중)되며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 α (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6. 25.)하고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 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추진배경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및 공모 추진

주요내용 차질 없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 규모, 평가기준, 추진일정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5. 22.) 및 공모 시행(6. 25.)

시행일 공모는 6월, 선정은 11월

공간혁신구역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됩니다.

- ❖ 도심 내에서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 특히, 광역교통거점, 도심 내 유희지, 공공청사 등에 적용하여 직(Work)-주(Live)-락(Play)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공간혁신구역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개정안 주요내용(공간혁신구역)

추진배경 토지별로 용도, 밀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직적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다양한 융복합 공간 조성이 제한

- 주요내용**
- (개요)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도시혁신구역) 유희지에 적용하여 토지의 용도,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
 -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능 복합
 - (입체복합구역) 공공청사, 터미널 등 기반시설부지에 용도, 밀도 완화
 - (결정절차)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시·군) →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시·도)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044-201-4934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 ❖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공공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 또한, 자금(기금) 지원 및 도시규제(용적률 등)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해 저층 주거 공간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배경 기반·편의시설 공급 및 주택 정비 유도를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도입

- 주요내용**
- (개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연내 사업 선정(사·군 계획 수립 → 공모 신청)
 -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외, 자율주택정비 포함 지역, 주거환경개선 시급 지역 등도 기본 구상서를 통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 5년간 국비 150억원 지원
 - (일정) 가이드라인(6월) → 건설팅(6~9월) → 접수(9월) → 평가(10~11월) → 선정(12월)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 주택도시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 추진배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함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국민들의 주택품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검사 결과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전년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대상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의 명단을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 「주택도시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 추진배경** 성능검사 결과 공개로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확산시켜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공동주택 시공 유도
- 주요내용**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
-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주택도시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추진배경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 유도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적용
* 250mm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PC 버전)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 ❖ 한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 현재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임대차 신고

-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개선사항) 모바일을 통해 임대차 신고 가능
 - ①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②온라인(PC), ③모바일
 -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 시행일** 2024년 8월(예정)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336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합니다.

* LH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

❖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는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법」에 주거약자용 주택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규정

주요내용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를 확대*하고, * (현행) 지체장애인 등만 선택 가능 → (개정) 고령자 등도 선택 허용
- 욕실 '좌식 샤워 시설(설치) 및 수건걸이(높이 조절)'도 선택 항목에 추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79, 3580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강화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여야 합니다(7. 10. 시행).

- ❖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검사 일자, 기준, 결과 등)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CSI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건설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없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의뢰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가 아닌 CSI에 품질검사성적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투명한 품질검사를 위해, 건설 현장은 CSI에 품질검사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을 선정하여 품질검사 대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7. 10. 시행).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대행 의뢰

추진배경 건설현장 안전·품질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직접시행) CSI에 품질검사 결과 입력, 증빙자료 제출
 - (대행의뢰) 건설 현장은 정보망에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 선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결과입력)
 - ※ 건설 회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생산하는 품질시험 관련 자료, 품질검사기관에서 건설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품질시험 관련 자료
 - 2024년 7월 10일(대행의뢰)
 - ※ 계약하는 품질검사 대행 의뢰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044-201-4596

「시설물안전법」 개정(2024. 7. 17.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됩니다.

- ❖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으나,
-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2023. 12.)되면서 앞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합니다.
- ❖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법 시행 시기(2024. 7. 17.)에 맞춰 마련될 예정입니다.
- ❖ 정부는 안전점검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추진배경 안전점검 대행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 주요내용**
-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안전점검 대행 가능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행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대행 가능
 -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 법 시행 당시 업종 전환을 완료한 유지관리업자는 1년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인정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3)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업 등이 배송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로봇 배송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 ❖ 공동주택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 배송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인프라 활용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여 개별 기업이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이를 고려하여 우선 2024년 6월부터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 ❖ 실제 공동주택 단지를 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실증 단지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참여문의

한국통합물류협회(02-6954-6615)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배송로봇 기술 개발이 활발하나, 테스트베드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배송지(공동주택) 내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증·상용화하는 데는 한계
-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모의 공동주택 포함)를 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및 로봇 배송 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 추진
- 시행일**
 - 2024년 6월(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모의 공동주택 단지 개방)
 - 2024년 6월부터(로봇 배송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공동주택 단지 선정 검토를 위한 기업 수요조사)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044-201-3798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최대 4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 기존에는 주차복합타워 내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 ❖ 2024년 8월부터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을 40%까지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지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추진배경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을 통한 노후 도심 내 주차공간 공급 확대

※ 주차전용건축물 개요

- (정의)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로, 주차장 확충 지원을 위해 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적용 완화
- (인센티브) 건폐율 최대 90%, 용적률 최대 1,500%, 대지면적 최소한도 45㎡ 이상 등 건축규제 완화

주요내용

노후 도심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 제한 완화(30%→40%)

시행일

2024년 8월(예정)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264)

2024년 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됩니다.

- ❖ 4단계 사업을 통해 여객 1억명, 화물 630만톤이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1억명 이상)으로 발돋움(2024. 11. 오픈)하며,
 -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되었습니다.
- ❖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추진배경 항공수요 성장 적기 대응 및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지속 강화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제2여객터미널 확장(+2,900만명), 활주로 1본(제4활주로, 3,750m), 계류장(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 진입도로 확장 등
 - (기간/비용) 2017. 11. ~ 2024. 10. / 4조 8,405억원(공사 자체 부담)
 - (처리능력) 연간 여객 1.06억명(77+29), 화물 630만톤(500만톤+130만톤)

시행일 2024년 11월

인천공항 출국 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8)

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흥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만 운영하던 이지드랍 서비스를 수도권 주요 지역(강남역 또는 잠실역),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제주항공 외에 티웨이항공을 이용하시는 여객도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외 수하물 위탁서비스 확대(이지드랍)

추진배경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짐 없는 빈손 여행 경험 확대 제공

- 주요내용**
- (서비스 거점 확대) 기존의 이지드랍 서비스 단일거점(흥대 홀리데이인 호텔)을 수도권 주요 지역 등으로 확대 운영
 - (서비스 참여 항공사 확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외에 티웨이항공 및 외항사 등 참여 항공사 확대 추진

- 시행일**
- (서비스 거점 확대) 2024년 6월(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2024년 9월(수도권 주요지역)
 - (참여 항공사 확대) 2024년 6월(티웨이항공), 항공사 협의 추진(외항사)

항공교통 정보를 소비자에 가까이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044-201-4231

매달 항공교통 주요 정보가 공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 ❖ 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기 쉽도록 설명한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를 발간합니다.
- ❖ 소비자는 여행을 계획하는 노선 및 시간대에 대한 지연 정보와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추진배경 항공교통 이용자에 알 권리 확대를 통한 소비자 보호 제고

주요내용

- (지연율 공개) 노선별, 시간대별 지연율 및 지연 사유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소비자피해 분석) 항공사와 소비자간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 접수) 주요 사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전달

시행일 2024년 7월(최초 발간 후 매월 발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044-201-3852

2024년 7월부터 고속도로 등 다수의 시·도에 걸친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용이해집니다.

- ❖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해당 시·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간선 화물수송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지역
- ❖ 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권 자율주행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 개요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연구 지원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체계 유연화

- 다수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자동차 수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년(12개월)으로 연장**됩니다.

-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교역환경 급변 기간에 자동차 수출이행 기간이 경과되어 폐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 수출하지 못한 차량의 폐차 또는 신규등록(부활)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 추진배경** 중고차 수출산업의 대외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을 현행 9개월 → 1년(12개월)으로 연장
- 시행일** 2024년 6월 18일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044-201-3912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을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합니다.

* 6월: 경부선 추풍령휴(부산),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휴(광주), 광주대구선 논공휴(대구),
12월: 제2중부선 이천휴(하남), 순천완주선 춘향휴(완주)

❖ 현재 호남선 정읍(천안), 남해선 진주(부산), 영동선 덕평(북합) 3곳에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와의 보행 연결로 및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되며,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역 특산물 판매, 인접지역 관광·레저 등과 연계·운영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도로철도분야 | 2번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개방형 휴게소별 지역특화 방안

- 주요내용**
- (추풍령) 김천시 테마파크 연계, 명품먹거리 및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 (강천산) 순창 관관단지 연계, 행복장터 및 지역홍보물 설치 등
 - (논공, 춘향) 문화유적지 및 산촌마을 산책로 연계, 조형물 등
 - (이천) 이천 도자예술촌 연계, 행복장터 및 지역 홍보관 등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044-201-3952, 3699

2024년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합니다.

- ❖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서해선은 송산에서 홍성까지 새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김포공항, 대곡까지 이어져 서해선 축이 완성될 예정이며, 중부내륙선의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내륙권 철도 수혜권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안동~영천 구간 개통으로 중앙선이 완성되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의 경부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포항~동해 구간이 개통되면 부전에서 강릉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동해안권 철도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철도 7개노선 개통

주요내용	구분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사업내용		홍성~송산 간 복선전철 90.0km	포승~평택 간 단선전철 30.3km	신창~대야 간 복선전철화 118.6km	이천~문경 간 단선전철 93.2km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145.1km	포항~삼척간 단선비전철, 포항~동해 전철화 172.8km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9~2027/ 4조 937억원	2004~2030/ 7,091억원	2018~2027/ 8,396억원	2005~2025/ 2조 5,504억원	2010~2025/ 4조 3,352억원	2002~2025/ 3조 8,679억원
주요일정		2024. 10. 개통예정 *내포역 기점 (2026. 하반기) 개통 예정	2024.10. 개통 예정 안중~오성 (2단계) *오성~평택 (1단계 개통, 2015)	2024.10. 1단계 개통 (신창~홍성, 36.4km)	2024.12. 개통 예정 충주~문경 (2단계) *이천~충주 (1단계 개통, 2021)	2024. 12. 개통 예정 *도담~안동 (1단계개통, 2022)	2024. 12. 개통 예정 *포항~영덕 (1단계 비전철 개통, 2018)

시행일

2024년 하반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044-201-3982

2024년 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개통합니다.

- ❖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을 위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또한, 전동차가 투입되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도 광역철도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 추진배경**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광역철도망을 구축, 대구권 주요 도시 간 접근성 향상
- 주요내용**
 - 사업구간: (경북)구미~대구~(경북)경산, 61.85km
 - 총사업비/기간: 2,092억원 / 2015~2024년
- 시행일** 2024년 8월(시설물검증시험 완료), 2024년 8-11월(영업사운전), 2024년 12월(개통)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3981, 3972)

2024년 3월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하고, 연말에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합니다.

- ❖ 수서~동탄 구간 내 구성역 추가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또한 GTX-A 이용이 가능해지며, 구성역~수서역간 14분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연말 운정~서울 개통으로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 추진배경**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GTX 추진
- 사업개요**
- 사업 구간: 운정~동탄 82.1km
 - ※ (민자) 운정~삼성 42.6km, (재정) 삼성~동탄 39.5km
 - 총 사업비/기간: 5조 6,603억원 / 2019~2024년
- 시행일** 2024년 6월(구성역 개통), 연말(운정~서울 개통)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044-201-5050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연면적 기준 완화로 부담을 경감합니다.

-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반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상복합건축사업 부담금 경감

- 추진배경**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적용되는 부담금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 주요내용** 대도시권에서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 중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동일하게 건축연면적을 산정도록 변경
 - *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주차장, 공용청사 및 학교,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외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중(최초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89)

2024년 8월 21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간) 소유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양도가격 제한: (부지) 취득가 + 물가상승률 + 매입 세금, (건축물) 감정평가액

❖ 다만, 일정한 기간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7년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1일 이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 완화 시행

추진배경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을 부지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무기한 제한하고 있어 유사 법률에 따른 특구 및 산단 등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주요내용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 소유한 경우,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

* 7년은 입법예고 중인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1일 이전 확정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 044-200-5941

민간 참여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하여 경쟁 방식을 도입합니다.

-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세부 절차, 타당성 검증 등 규정 미비에 따라 특혜 시비 등 우려로 민간 부문 등의 신항만건설사업 참여가 부진하였으나,
- ❖ 7월부터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 추진배경**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간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
-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내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3자 공모 등을 통한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시행)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7

해외 현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합작 물류센터가 6개소로 확대됩니다.

❖ 현재 유럽·동남아 항만 인근에 물류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LA), 베트남(호치민)에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인도네시아(프로볼링고) 물류센터는 규모를 확장합니다.

* ①네덜란드 로테르담, ②스페인 바르셀로나, ③~④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수라바야

❖ 확보된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통해 ①우리 중소·중견기업 화물 우선 처리, ②현지 시장 대비 10% 내외 저렴한 사용료 제공, ③현지 물류·통관 컨설팅 등의 혜택을 우리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관련 보도자료(게시 예정)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대

추진배경 해외 현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 지원

주요내용 민관합작 물류센터 2개소 추가(미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물류센터 확대 운영

시행일 2024년 10월(미국 LA), 2024년 12월(베트남 호치민), 2024년 9월(인니 자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시행일: 2024년 3월 29일(139개 시·군에서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난개발·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도입·추진됩니다.
-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정부가 마련(4월)한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내용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기반 활성화 등 추진
-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국비사업 통합 지원 (5년간 최대 300억원)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 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

시행일: 2024년 8월 7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식용 목적 개 사육·종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3년 유예)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시행일: 2024년 7월 3일

기준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8년
(최초 5년+연장 3년)



변경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기간 확대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16년
(최초 7년+연장 3년×3회)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시행일: 2024년 10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기준

- 지금까지 청년기업 육성 목적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펀드규모 : '23년 152억원)



변경

- 청년기업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 (펀드규모 : '24년 470억원)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시행일: 2024년 10월(예정)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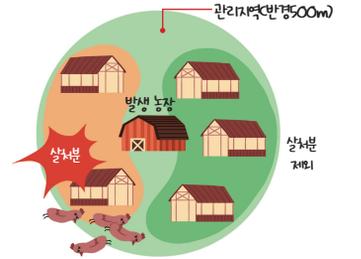
-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 농장의 가금에 대하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500m 내 5개 농장 모두 살처분

변경

-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예시) 2개 농장 살처분, 위험도가 낮은 3개 농장 살처분 제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기존

- 지금까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등 121개 품목을 판매해왔습니다.



변경

- 향후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산물 거래도 시작해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합니다.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시행일: 2024년 6월

기존

- 지금까지 어업인은 어선검사 뒤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발부받아 선내 등에 비치했는데, 파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했습니다.



변경

- 앞으로는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검사 신청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발급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도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됩니다.

이에 앞서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선정*과 거래규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기존

- 지금까지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 지속적인 김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합니다.

*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7월부터 면허 발급 예정(시·군·구)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시행일: 2024년 6월



-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를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합니다.

*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

기존	변경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
-	(추가)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9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044-201-1556

난개발·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도입·추진됩니다.

- ❖ 각 시·군은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하여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 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 * 「농촌특화지구」 도입(7개 유형):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하고, 농촌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앞으로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정부가 마련(4월)한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국가 기본방침) 기본방향 등 제시(10년) →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추진방향 마련(10년) → (시·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5년)

- ❖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주민들께서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등을 통해 계획 수립·실천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주민제안: 지역에 필요한 사업,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시·군에 제안
 - ** 주민협정: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규약 마련 → 시·군이 이행 지원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계획 도입·추진

추진배경 농촌의 난개발·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으로 정책 틀 전환

- 주요내용**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으로 주거지역 생활SOC 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 각 지자체·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 위한 국비사업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

시행일 2024년 3월 29일(139개 시·군에서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 2. 6. 제정).

- ❖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4년 2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식용종식법」(약칭) 본격 시행

추진배경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주요내용 •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폐업 지원 등

시행일 2024년 8월 7일
* 식용 목적 개 사육·종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3년 유예)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됩니다.

* 「농지법」 개정(2024. 1. 2.) 및 시행(2024. 7. 3.)

**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 ❖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했으나,
-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 가능했습니다.
 - * 현재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 ❖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 9년)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확대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2024. 1. 2. 개정)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추가 확대*
- * 현행: 최장 8년 → 개선안: 16(7+3+3+3),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2024년 10월 내로 결성합니다.

- ❖ 청년기업 육성 목적의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으나,
 -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023년 152억원 → 2024년 470억원) 하는 등 농식품 청년기업 대상 펀드 운용체계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 ※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up 펀드, 200억원
- ❖ 올해 10월 새로운 펀드가 결성된 후 농식품 청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농식품 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추진배경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청년기업 성장단계별 펀드 운용체계 구축, 총 470억원 결성

시행일 2024년 10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계란 및 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최소화

추진배경 지난 겨울철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살처분을 하여 계란 등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보다 정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시행일 2024년 10월(예정)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7)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합니다.

-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합니다.
* 거래 품목: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 (추가) 수산
- ❖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024년 121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참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공지사항)업무규정 개정 안내

수산물 품목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 추진배경**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온라인도매시장 명칭 변경 및 거래 품목 확대
- 시행일** 2024년 5월 22일(ㄹ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농촌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 1. 2. 제정).

❖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이 부과됩니다.

* 안전사고(붕괴, 화재 등)나 범죄 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철거 이외 경우 200만원(지자체 조례로 50% 경감 가능)

❖ 한편,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빈집에 개축·용도 변경 시 특례**를 부여하여,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공간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20% 이상일 경우

**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견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기준 완화

빈집 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추진배경 지자체에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빈집 우선 정비구역 개념 도입 및 적용 특례 부여 등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2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됩니다.

*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초등학교·발전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으나(국토계획법)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500㎡ 미만의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의 건축 가능

❖ 종전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에만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표지판, 방음벽, 옥외광고물 등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이 아닌 것

** 구체적인 허용 지역, 허용 건축물의 종류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

❖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추진배경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주요내용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특례의 적용 범위를 건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증축·개축) 행위에서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까지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 8. 16. 제정).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농촌 지역에 서비스 제공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경영 개선,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2024년도 현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 130개소 지원 중
- ❖ 이로 인해 농촌 주민 등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시행

추진배경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됩니다.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 이를 계기로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익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고,
-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로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추진배경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 조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 단지 지정
 - (보급·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2024년 6월 12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조성 완료됩니다.

❖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입니다.

50ha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단지는 스마트농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규모 무인 농업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에서 미래 농업기술 선점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확산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농민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추진배경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 주요내용**
- (미래형 농경지 조성) 무인자동화 농업생산에 적합한 미래형 농경지 조성 및 자동 관·배수 시스템 설치 등
 - (지능형 원격관제 통합플랫폼) 클라우드 등 플랫폼 운영 인프라, 농작물 생육관찰 및 농작업 시기 결정, 농작업 수행 등 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스템
 -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기계에 센서, GPS 수신기 등을 활용하여 농작업 환경 및 위치 등을 인식하고 사람의 조작 없이 농작업 수행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 ❖ 농어촌에서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주거안정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 ❖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지법」 주요내용

추진배경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24년 9월(예정)부터 농지대장상 농지 이용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농막 및 농축산생산시설(축사 등) 설치 등

- ❖ 당초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의 이용정보를 변경·신청하기 위해서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해당 농지 관할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 ❖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변경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고 농지대장 정보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농지법」시행규칙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 추진배경**
 -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및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설치 시 소유자·임차인에게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고의무 부여(2022. 8. 18.부터)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농지 소유자·임차인의 불편 초래
- 주요내용**
 - 농지 소재지 지자체 방문을 통한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농지 소재지 방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신고 시간·비용 절감
- 시행일** 2024년 9월(예정)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 농협과 협력하여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 ❖ 삼성전자의 전문인력이 식품 제조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도입을 지원하고, 농식품부와 중기부, 농협은 정책자금·융자, 보조를 활용하여 판로·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은 2024년도 6월에 공모하여 올해에는 총 30개의 식품 제조 공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중기부 협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배경 식품 제조업체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 확대 등 농식품부-중기부 협업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삼성전자의 전문인력, 농식품부-중기부의 정책자금·융자, 보조를 활용하여 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수출 지원 사업 연계 추진

※ (농식품부) 정책금융·융자, 원료매입 자금, 농공상 기업 지원,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등 (중기부) 출연금 매칭, 흡소핑·전용 판매장 지원, 동행세일·판판대로 등 판로 지원 (삼성전자) 출연금 매칭, 스마트공장 대상 기업 선정,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농협) NH농식품기업우대론 등 자금 지원(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이자납입 유예 등)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김치 제조업체 대상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32

2024년도부터 김치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절임용 염수(소금물)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용 후 절임용 염수를 이물질·거품 제거, 오존 접촉·반응 등 처리를 통해 재사용

❖ 김치 제조업체는 김치의 원료를 절이는 과정에서 다량의 절임용 염수를 사용하는데, 염수 재활용을 통해 소금류(천일염·정제염)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으로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을 통해 김치 제조업체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추진배경 김치 제조업체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절임용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비용 지원
※ 구조토자동여과장치, 오존도산화처리장치, 오존발생장치, 거품분리기 및 부대시설 등 절임용 염수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 일체
 - (예산) 총 사업비 50억원 (개소당 2.5억원)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국비: 총 예산 15억원, 개소당 7,500만원
 - (지원대상) 중소 김치 제조업체 / 약 20개소 내외

추정일정 (2024. 3~4월) 사업자 공모(지자체) → (6월)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7월) 사업배정(농식품부·지자체) 및 사업 추진(선정사업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조건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44-201-2187)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의 최소 분양면적 조건을 완화합니다.

- ❖ 당초 1만평 이상만 분양할 수 있던 '글로벌식품기업준'의 분양 조건이 대·중·소규모 필지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 * 2021년 7월 외투기업 대상부지인 '글로벌식품기업준'의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분양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중소기업 분양 제한 등으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 ❖ 내에서는 2024년 상반기 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글로벌 식품기업준'에 대한 분양 재공고 예정으로 재공고 이후부터 필지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조건 제한 완화

추진배경 '글로벌식품기업준'의 분양조건 제한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 식품기업 투자유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글로벌식품기업준의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 없이 필지별로 분양 허용
※ 최소 분양면적 제한기준 완화: 1만평 이상 → 필지별(1,100~8,000평)

시행일 2024년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044-201-2182

2024년 하반기부터 식품 분야 청년창업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내)를 신규 개소합니다.

❖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는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창업 편의시설을 제공* 하여 식품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 조건: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하 기업

❖ 시설 이용자는 식품 분야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추진배경 식품 분야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 제작, 창업 교육·공간 제공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공간 구축 필요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2024년
- (총사업비) 282억원
- (지원조건) 국비 100%
- (주요시설) 사무실(14실), 임대형공장(10실), 시제품제작실(1실), 기숙사(44실), 회의실(9실), 콘서트홀, 멘토링센터, 촬영스튜디오, 창업정보 자료실, 재료창고 등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044-201-2184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4년 6월부터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 ❖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에서는 식품창업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스톱 정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①식품소재 등 공급지원, ②시설·장비 개방 및 공유 현황, ③전문가 및 교육 지원, ④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12개소) 사용 정보 등
- ❖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주소는 www.foodpolis.kr이며, 회원가입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재된 식품정보의 DB화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배경** 식품기업의 디지털기반 통합 정보 서비스 요구 확대
- 주요내용**
 - (식품정보DB 구축) 공공데이터를 우선 연계하고 농가, 식품기업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민·관·학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2024년부터)
 - (플랫폼 구축) 통합된 데이터가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의 표준화 및 구조화된 서비스 플랫폼 구축(~2026년)
 - (가상클러스터 구축) 산업주체 간 비대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기술(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기반의 가상식품클러스터 구축(~2029년)
- 시행일**
 - 2024년 5월 28일(식품산업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 2028년 이후(식품산업의 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활용 서비스 제공)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0

농축산용 미생물제품(미생물 농약, 비료, 사료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MP인증* 기반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 시설**이 2024년 하반기에 구축됩니다.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2022~2024년 / 전북 정읍

국내 중소 미생물기업은 해당 시설을 통해 GMP인증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규격에 맞는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GMP인증 시설(정읍 소재)을 통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형화, 시제품 생산 등 지원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준공

추진배경 농축산용 미생물제품(미생물농약, 비료, 사료 등)의 부가가치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GMP기반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주요내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농축산용 미생물기업에게 제품의 생산 지원
- (사업시행주체)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전북 정읍 소재)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8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소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성원료은행이 준공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 ❖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의 가공 공정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기업에 제공* 하고, 원료 인정 절차 등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 원료별 지표성분 함량 분석, 지표성분 함량과 유해물질 규격에 따른 안정성 시험 등
 - ** 원료 제조사 대상 유효성평가, 안전성평가, 인체적용시험 등 절차 안내
- ❖ 기업 수요에 맞는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를 비축하고, 기능성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포털(FMIS)을 통해 분양 가능한 원료 목록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원료 분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기능성표시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①제품 유형에 적합한 원료 추천·공급, ②시제품 개발·평가, ③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지원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능성원료은행 운영

추진배경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소재 생산·보관·공급 등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능성원료 국산화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 주요내용**
- (사업내용) 기능성원료 생산·보관·공급과 제품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산기능성원료 활용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제품화·판로 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0~2024년
 - (사업규모) 총 150억원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주체) 지자체(전북 익산시)
 - (지원대상)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2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해 공급가격을 인하합니다.

- ❖ 정부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루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쌀가공 식품협회를 통해 식품기업 등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 2023년산 가루쌀 판매가격은 당초 1,540원/kg으로 결정(2023. 12. 8.)하였으나, 초기 시장 형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0원/kg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 아울러 식품·외식업체 등 수요처 대상 제품 개발 및 판촉 지원, 원료 가공비 지원(20만원/톤) 등을 통해 가루쌀 산업 기반 형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루쌀 공급가격 인하

- 추진배경** 가루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
- 주요내용** 가루쌀 판매 가격은 당초 1,540원/kg으로 결정하였으나 1,000원/kg으로 인하
- 시행일** 2024년 4월부터

쌀 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쌀 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2

쌀 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쌀 가공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2024년 7월 24일 「쌀 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한 「쌀 가공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23일 공포

-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 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였고,
-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쌀 가공산업 수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쌀 가공산업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쌀 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쌀 가공산업법」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 수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명확화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수혜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신청자 정보를 유관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비대면 사업 신청·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이 2024년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는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정 여부, 지원금액 및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 시범사업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복지부)·금융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2024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시행(2025년)에 대비하여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사업신청 및 정보조회)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정보(복지부)를 금융 기관(바우처카드)·유통업체(사용처) 정보와 연계하여 온라인 사업신청 및 바우처 지원금액·사용내역·잔액 조회 기능 제공
- (사업 운영 및 관리)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 정보와 금융기관·유통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예산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추진

시행일

2024년 하반기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9

그간 가격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물류기기 임대 업체 간 가격 비교가 어렵고, 관례적인 계약에 의존하여 이용하였던 물류기기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전환합니다.

-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24년 하반기)하여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개(www.atpool.or.kr)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 ❖ 파레트, 플라스틱 박스 등 물류기기의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사용하는 물류기기의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추진배경 파레트 등 물류기기의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유통비용 경감 추진

주요내용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개(atpool 시스템)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4년 하반기(2025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버섯산업 발전과 생산능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버섯 임의자조금*을 설치하여(2024. 5. 승인)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 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버섯 임의자조금 운영을 통해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배경 버섯산업 발전과 생산능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 주요내용**
- 거출금은 20원/㎡이며, 거출금 부과대상은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으로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기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5)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2024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까지 확대합니다.

-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 2023년부터 저탄소 인증 한우를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 ❖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023년 71건 → 2024년 150건)할 예정입니다.
- ❖ 앞으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추진배경 저탄소 축산물 생산 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주요내용**
- 인증 확대 대상: 돼지, 젓소
 - 사전요건: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 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시행일 2024년 7월(농가 신청 및 현장 평가), 2024년 4분기 중(판매)

국내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2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수출 관련 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소통 확대를 위해 '수출정보데스크(aT)'를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 2024년 3월 지역별* 전담직원(aT)을 신규 지정하였고, 수출에 필요한 정보 안내는 물론,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농식품부가 집중관리 및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합니다.

* (지역)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 대구, 부산·울산, 경남, 제주

수출기업은 2024년 6월부터 카카오톡 오픈톡 또는 유선전화(061-931-0119)를 통해 수출지원 정보를 안내 받고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추진배경 정부-수출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K-Food 수출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지역별 '수출정보데스크(aT)' 운영을 통해 민-관 소통 강화 및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파악·해소
- 접수된 애로사항은 관계 부처·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소 추진

시행일

- 2024년 3월(유선전화 061-931-0119)
- 2024년 6월(카카오톡 오픈톡)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물에 젖고, 찢어지고, 잃어버리던 불편한 종이 어선검사증서가 디지털 형태의 전자어선검사증서로 발급됩니다.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이 대상입니다.
- ❖ 해당 검사증서 및 확인증은 검사완료 후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사신청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발급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자유롭게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어선검사증서 디지털 전환(24.6.21.시행)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추진배경 어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종이 형태로 발급하던 어선검사증서의 발급 방법·형태를 개선 추진

주요내용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어선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 어선 특별검사증서 등)의 발급 방법·형태를 비대면·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별도의 관청 방문 없이 필요 시 전자검사증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이메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2024년 6월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057)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거래가 개시 됩니다.

※ 업무규정 개정, 거래 품목 선정 및 규격화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7. 1.)부터 수산물 거래 개시

❖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 선정*과 거래규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024~2025) 냉동·건어물 중심 → (2026) 선어류까지 확대

❖ 또한, 권역별 온라인도매시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수산 분야 관계자들의 플랫폼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동정) 5.24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추진배경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 제고

주요내용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거래 품목 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수산물 거래 개시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4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ha)를 발급합니다.

- ❖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으나,
- ❖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하기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ha)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합니다.
- ❖ 올해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 ❖ 신규 면허 처분 이후에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식 작업을 시작하면,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7월 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추진배경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 추진

주요내용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 발급
*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7월부터 면허 발급 예정(시·군·구)

시행일 2024년 7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2024년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근해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물코·어구 규격·선박량 등 완화된 어업규제* 를 적용받습니다.

* 연안통발 그물코 금지규격(22mm → 18mm),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규격(20m → 35m) 등 업종별 수요에 따른 규제완화 추진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선진화 정책(2023. 9. 18.)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도입 및 어업 현장 규제완화 추진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조업실적 보고 등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완화된 어업규제* 적용
* 연안통발, 실뱀장어안강망 등 15개 업종대상 15개 규제완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다년제 총허용어획량(TAC) 도입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그간 모든 어종에 대해 1년 단위로 적용하던 TAC를 3년 단위로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도입합니다.

- ※ Total Allowable Catch(TAC):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연간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어획
- ❖ 풍어 등으로 TAC가 부족할 경우 차년도의 물량을 당겨 쓰고, 흉어 등 미소진 물량은 이월하는 유동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 2024년 7월부터 TAC가 정착된 어종인 고등어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타 어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2024.7월 TAC 시행계획

다년제 TAC 개요

- 추진배경** 현재 단년으로 적용하는 TAC는 풍어, 흉어 등 상황에 유동적인 대응이 곤란
- 주요내용** 고등어에 3년제 TAC를 적용하여, 당겨쓰기·이월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하며, 매년 TAC를 설정하지 않고 3년 단위로 TAC를 설정하여 행정구조 효율화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3)

유럽 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무역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프랑스 파리 무역지원센터'를 11월에 신규 개소합니다.

- ❖ 신규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지역 중 관광객이 많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며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 파리로 선정하였습니다.
- ❖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한국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 유럽 내 수출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초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11월 예정)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추진배경 유럽 내 한국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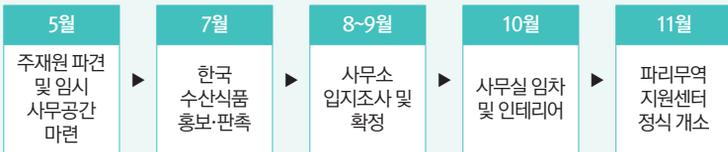
주요내용 • 유럽 내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 마케팅, 유럽 내 수출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초보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지원 등 역할 수행

※ 한국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 및 EU권역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구분	2014년	2016년	2020년	2023년
전체 수출액	2,067	2,128	2,312	2,997
EU권역 수출액	119.2	145.9	160.2	177.6

• 추진일정



시행일 2024년 11월

수산물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물 양식산업과(☎ 044-200-5633)

수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수산물재활용 유형이 확대됩니다.

*「수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수산물재활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신기술·제품도 계속 개발·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습니다.
- ❖ 「수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정 이후 확대된 용도로 수산물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물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수산물재활용 유형 확대

추진배경 「수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상황 반영

주요내용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

시행일 2024년 4분기(예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83)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산란하므로 그 환경에 맞는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합니다.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밭줄식·말목식·땃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 기존 수산종자는 해상(공유수면)에서 자연채묘하는 환경을 고려,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고 있습니다.

※ 새고막·굴·김 등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960여 개소(30%)에서 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여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중

❖ 이에 수산종자의 산란·생산이 가능한 수면에서는 누구든지 그 수면을 구획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추진배경 누구든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종자생산업 허가종류 범위 확대

주요내용 (허가종류 확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밭줄식·말목식·땃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그간 주의보, 경보 2단계로 제공되던 산사태예측정보의 주의보와 경보 사이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약 1시간 정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자체)의 장 등에게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 정보는 2024년 6월부터 **주의보**(토양함수율 80% 도달 시), **예비경보**(90% 도달 시), **경보**(100% 도달 시) 3단계로 제공됩니다.
- ❖ 산사태예측정보 예비경보가 추가되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내외 조기 확보(토양함수량 90%→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산사태예측정보 체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 추진배경** 사전대피·대피명령을 위한 상황 판단 기준이 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단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를 위해 현 2단계(주의보, 경보)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로 운영되도록 개선
※ (현행) 산사태예측정보 주의보, 경보 → (개선) 산사태 예측정보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
- 시행일** 2024년 6월(「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 공포)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그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원재료의 정합성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요구에 따라 「목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24일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절차를 법제화하고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목재이용법」 개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추진배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원재료의 정합성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요구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 공포)
- (개정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범위 명시, 수집허가·증명절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 지정, 사법경찰권 부여, 벌칙조항, 과태료 부과 등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감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시행됩니다.

❖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과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이 1%에서 0.1%로 조정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금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산림행정미디어센터<보도자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추진배경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1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E-9)가 시행됩니다.

- ❖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중요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되어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2024년 3회차(7월 예정)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

추진배경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산촌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외국인력 제도 도입 추진

주요내용 (허용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다만,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임업 단순 종사원’을 고용

시행일 2024년 7월 예정(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기)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 7월 3일부터 보전국유림 내에서도 벌통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보전국유림 내 사용허가 가능한 용도에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알림)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안내

보전국유림 내 양봉사업을 위한 벌통 설치 가능

추진배경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등 합리적 국유림 이용을 위해 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가능범위 확대
• 벌통, 채밀기 등 사용허가 가능한 간이 시설물에 대한 기준 추가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3일

생성형 AI 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063-238-0479)

고객지원담당관실(☎ 063-238-0581)

그동안 농업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퇴직 전문가를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전화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보다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를 2024년 9월 3일부터 제공합니다.

- ❖ 농업기술의 핵심 정보를 학습한 AI의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답변을 제공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 2024년에는 식량, 원예, 축산 분야의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시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2025년 부터 현장농업기술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생성형 AI 활용, 대국민 농업기술 활용 편리성의 획기적 제고

주요내용 • 아날로그(전화상담) 방식으로 처리해 오던 민원인 상담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 보다 쉽고 빠른 농업기술상담 서비스 구축

※ 민원인의 자연어 질의어를 종합 분석, 지속적인 기술정보 보완

• 식량·원예·축산 분야 핵심 재배·사양기술, 병해충·질병 등 농업기술 제공

※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기술서 100권 선정, 검증을 거친 답변 처리

시행일 2024년 9월 3일(농사로에서 제공-AI 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개시)

※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전문포털 사이트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5)

간단한 자가 경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수리가 가능한 경정비(소모품, 오일류 교환)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농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농업기계의 긴급 고장은 농작업이 지연되어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수리비 발생으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 이에, 기존 보유 농업기계에 수리·정비 동영상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QR코드를 부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원스텝 정비서비스(All in one Care)를 제공합니다.

※ 대상기종 6기종(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방제기)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 수리비 절감을 위해 직접 수리가 가능한 경정비 등을 농업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필요

주요내용 기존 보유 농업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가 가능한 경정비(소모품, 오일류 교환)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의 동영상에 바로 연결

시행일 2024년 12월(예정)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063-238-1022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2차 시험이 '서술·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으로 개선됩니다.

- ※ 2차 시험: (기존) '논술형'과 '약술형' 혼합 시험 → (변경)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된 주관식 시험
- ❖ 또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 2024년 6월에 관련 법이 시행되었고, 2024년 8월에 실시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 홈페이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 추진배경** 2급 치유농업사 2차 시험의 논술·약술 형태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과 채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2차 시험이 '서술·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개선
 - 1차시험 면제 규정 명확화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 면제
-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063-238-2518)

그동안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되었던 '농장 단위 작물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2024년 말까지 전국 1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전국 110개 시·군에 농장을 보유한 농업인이 농장별 기상 및 작물의 기상재해 발생위험 예측정보와 함께 피해를 줄이는 대응정보를 최대 9일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agmet.kr/signup)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팩스번호: 063-238-3823, 전자우편: kjw130@korea.kr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확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 추진배경** 기상재해 피해저감을 위해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 지역 확대
- 주요내용** 예측·예방 기반의 '농장 단위 작물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 1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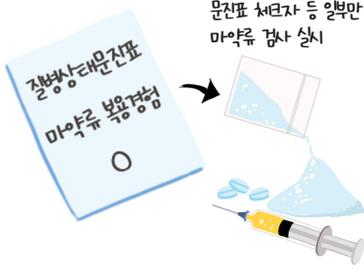
국방·병무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기존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선별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변경

-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02-748-5743)

장병*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손쉽게 여객 승선권 및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 공무 출장, 청원 및 포상휴가시 여객선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병(연간 5만명 이상)

- ❖ 기존에는 장병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만이 가능하였으나,
- ❖ 2024년 11월부터 전산체계를 통해 여객선 또는 항공편 이용을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가보고 싶은 섬,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시간'을 선택하여 사전예매가 가능합니다.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이동을 원하는 장병이 관련 증빙서류(후급증, 출장 명령서 등)를 제시하고 현장 발권하는 방식만이 가능함에 따라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장병 편의 개선 및 행정서류 제로화, 개인정보 보호 등이 요구됨
- 주요내용** 2024년 11월부터 여객선 및 항공편 이용을 원하는 장병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 장병의 편의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여객 승선권) 가보고 싶은 섬 앱, (항공편) 밀에어(MILAIR) 앱
- 시행일** 2024년 11월 1일(잠정)
※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선사에 한하여 시범 운용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7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출시됩니다.

❖ 가입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 대상이며,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하여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추진배경 청년 제대군인 자긍심 고취 및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주요내용**
- (대상)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시행일 2024년 7월 중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추진배경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 입영 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

주요내용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입영·소집 통지서 교부자, 모집병 지원자
 -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개정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 ❖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장·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및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41호, 제6조제38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추진배경 병역면탈 조정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병역면탈·기피 범죄 수사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주요내용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사법경찰직무법」 개정, 2024. 7. 17. 시행)
 - (기존)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수검한 자 수사
 - (추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장·소집)까지 수사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3

2024년도 선발(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를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합니다.

- ❖ 그동안은 9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선발하여,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에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으나,
- ❖ 2024년부터는 모집 시기를 변경하여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 이를 통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가·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되어 민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병무청 누리집(보도자료)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추진배경 카투사에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그해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 민원 편익 제고

주요내용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구분	지원서 접수	공개 선발
전년도	9. 14. ~ 9. 20.	11. 2.
	↓	↓
올해	7. 5. ~ 7. 11.	9. 3.

시행일 2024년 7월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현재 서울, 부산,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센터

❖ 7월부터는 울산, 창원 및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진로설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 복무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주요내용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온라인) 직업선택도검사 실시
- 전문상담관 1:1 심층 상담 →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

입영 정보 제공

- 병역의무이행 과정 절차 소개(취업 맞춤 특기병, 기술병 지원 등)

군 적응 체험 교육

-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군복·전투식량 사식 체험 등

센터 운영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센터

(추가) 울산(7. 25.), 창원(7. 18.), 의정부센터(7. 16.)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병무청 누리집)병역진로설계)개인·단체 신청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9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시마다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 그동안은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자격·면허,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서류를 매번 제출했었으나,
- ❖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모집병 제출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병역의무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
- 주요내용** 모집병 재지원 시 지난 회차 제출서류 다시 사용
※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재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규 제출 가능
- 시행일** 2024년 7월 1일(2024. 10. 입영)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병무청 병역조사과 ☎ 042-481-2891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확대됩니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그동안은 체육선수 범위를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5개* 프로단체에 등록된 선수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로 하였으나,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 8월 7일부터는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병적을 관리합니다.

*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 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추진배경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 소속되었던 선수가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같은 종목의 일부 비영리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 관리범위 확대(「병역법」 개정, 2024. 8. 7. 시행)
- (현행)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단체의 등록 선수, 해외 활동 중인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 (추가) 당구, 볼링, 바둑 등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육단체의 등록 선수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1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그동안은 복무관리 부실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해 인원 배정만 제한하였습니다.
- ❖ 7월 10일부터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 이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관련 법령: 「병역법」 제23조의5 제3항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조치

- 추진배경**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 피해 시 이동근무 조치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2024. 1. 9. 공포)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근거 신설(「병역법」 제23조의5)
-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금지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843)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위조부품등'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 등을 말하며,
- ❖ 2024년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 추진배경** 군수품에 사용하는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부품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
- 주요내용** 방위사업 관련 계약 이행과정에서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치
-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6)

국가 R&D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합니다.

- ❖ 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기획서 및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통해 연구주제를 발굴합니다.
- ❖ 사업관리도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 국방연구개발의 꼼꼼한 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양 부처의 전문기관이 참여합니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시행

추진배경 국가 R&D 성과 등을 활용하여 국방기술을 신속·효율적으로 획득

- 주요내용**
- (연구주제 발굴) 국방기술기획서 대상 산·학·연 공모 및 각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연구주제 발굴
 - (사업관리)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아래 꼼꼼한 국방연구개발 관리가 접목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협업

시행일 2024년 7월 1일(연구 개시 예정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하순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솔루션 지원

입주 예정 기관

-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스마일센터,
- ③피해자 국선변호사, ④진술조력인, ⑤검찰,
- ⑥경찰, ⑦대한법률구조공단, ⑧법률홍닥터,
- ⑨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⑩서울시 스톱킴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⑪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 ⑫서울시 복지공무원, ⑬서울일자리센터,
- 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기존

-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변경

- 앞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기존

- 지금까지는 신분 증명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 앞으로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경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드론 비행금지 1,000만원 벌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3일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발"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

- (긴급조치) 경찰관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난명령) 경찰관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기존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했습니다.



변경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영장 발부 없이 협조요청만으로도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기존

구분	변경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변경

구분	변경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관부처	소방청
소화기 비치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과기정통부는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7. 19.)되어,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최대 120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누리집)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추진배경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주요내용

- 화재, 재난 등 발생 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면제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74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올해 7월,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 법무부, 검찰·경찰,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기관: ①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스마일센터, ③피해자 국선변호사, ④진술조력인, ⑤검찰, ⑥경찰, ⑦대한법률구조공단, ⑧법률홍닥터, ⑨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톱킴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⑫서울시 복지공무원, ⑬서울일자리센터, 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함께합니다.

- 최초 방문 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인 후 입주기관으로 안내·연계하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추진배경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주요내용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지원 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시행일 2024년 7월 하순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법무부 의료과(☎ 02-2110-3388)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 교정본부 및 내·외부 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처방 및 과다복용 사례를 심의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위촉

❖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를 개선하겠습니다.

- 원격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전산 모니터링 실시, 부적정 처방 또는 과다복용 사례 발굴,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중복·과다 처방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추진배경 원격·초빙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 지속적 발생으로 개선방안 필요

주요내용 - (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주소연 등 7명
- (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장 이은주 등 5명

시행일 2024년 3월 25일(5. 31. 1차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개최 예정)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 02-2110-3665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기존에는 해외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위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지원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법무부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 예고)「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원절벽 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필요
- 주요내용**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시행일 2024년 7월 19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예정)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으로,
 -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추진배경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 국민 불편 해소

주요내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IC 칩 비용 5,000원 부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배경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도입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최근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국가주요시설이며 보안시설인 우리나라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및 시행(2024. 7. 24.)

- ❖ 항만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항만시설의 공중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으며,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항만보안의 위협요인인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관리로 항만시설의 보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2조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비행 금지

- 추진배경** 드론 등 비행체를 활용한 국가주요 항만에 대한 테러 등 보안 위협 대응 강화
- 주요내용**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경우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3)

연안 먼바다(~최대 100km)에서도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 바다내비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다 날씨, 기상특보와 함께 해양사고 등 돌발 해양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계절별 안전 캠페인 그리고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11월, 잠정)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먼 바다에서도 선박운항 중 안전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서비스 도입
- 주요내용** 국내 연안(~100km)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다날씨, 해양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라디오 서비스 도입
- 시행일** 2024년 11월(정식 서비스 운영)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 공간을 조성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 지역에 완충 공간을 확보해 연안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충 공간의 토지를 매입·정리하여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 현재 본사업 착수 전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 중(2023년~)이며 2024년 설계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강릉 순곳·사근진지구, 고창 명사십리지구 시범사업
- ❖ 또한,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모델 정립 및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안심해안사업 실행방안수립용역(~2024. 12.)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국민안심해안 보도자료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

- 추진배경** 연안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재해대응 능력 강화
- 주요내용**
 - 동·서해권 시범사업(2개소) 추진(2023년부터)
 - 국민안심해안 실행방안 수립을 통한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 마련 등(2024년)
- 시행일** 2024년 12월(실행방안 수립)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1988년 최초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이후 해상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울산항 인근 교통안전특정해역 일부를 제외합니다.

- ❖ 2024년 6월부터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조정되면서 기존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에서 포함되었던 해안가를 제외하고, 제외된 해역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 공사·작업 시 사전 허가제 등이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국무조정실 누리집(보도자료)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추진배경 최초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1988년) 이후 해상교통환경 및 선박통항량 변화 등으로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해역에 대해 재검토 추진

주요내용 해안가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 및 특정해역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고 거대선이 통항하지 않은 특정 해역은 범위 조정

시행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괄개정안 시행 이후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52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입니다.
 - ※ (예시) 2024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2025년 3월말까지 세관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구매대행 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세관 신고서 등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 여기로>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

-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통관환경 조성
-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
- 주요내용**
 - (등록신청) 다음 해 3월 말까지
 -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등록 유효기간) 3년
 -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5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

-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와 신고서 등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현행) 부호·성명 or 전화번호 → (개선)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참고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 여기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 추진배경**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개인 통관 정보 보호 강화
- 주요내용**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시 제출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뒤4자리)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고서 등 접수 가능
- 시행일** 2024년 8월 29일(예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경찰청 치안상황과 ☎ 02-3150-2646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 됩니다.

-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며,
 - ❖ 재난·재해·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와 관련, 긴급출입 과 일시사용·제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 한 경우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112신고자 포상금 예산 확보 중).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309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정기간을 적용받는데, 결정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 제50조의3, 제73조제6항, 제80조의2, 제82조제2항제10호, 제85조의2, 제93조, 제148조의3, 제152조제1호의2, 제160조제1항제9호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 추진배경**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
- 주요내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02-3150-1394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수사 조치가 강화됩니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 우려가 높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중요하지만,

- 경찰관은 그간 실종아동 등 경로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성 있는 수색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 신용·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9. 27. 시행).

※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 장소

- 또한, 경찰관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처벌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향후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의 수색이 기대됩니다.

※ 단, 경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참고 법령정보센터 누리집「실종아동법」 검색)번호 2 [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 법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영상, 신용·교통카드 기록, 의료기록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법 제17조(벌칙):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8조의2(벌칙):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9)
교통안전과(☎ 02-3150-0603)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사용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2024. 7. 31. 시행).
- ❖ 이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실생활에서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0155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범위 등 근거 마련

추진배경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높임

주요내용 • 기간 발급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만 규정되었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 마련
• 신분 증명·확인 범위 등에 대한 효력 규정을 명확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03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 또한, 부정한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구분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빌려준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빌린 사람			○(사용한 경우)
알선한 사람			X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추진배경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 강사 자격관리 강화 및 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03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 ❖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0270호

자동차 등 이용한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추진배경 교통질서와 금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예방

- 주요내용**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경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가 2024년 8월 14일부터 도입됩니다.

- ❖ 보수교육의 대상은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이며,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위법령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 (5. 22.~7. 1.),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통합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추진배경 경비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

주요내용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시 신고)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14일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2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변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변경

❖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

의무 설치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방청 누리집>소방소식>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추진배경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화재 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

주요내용 기존에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의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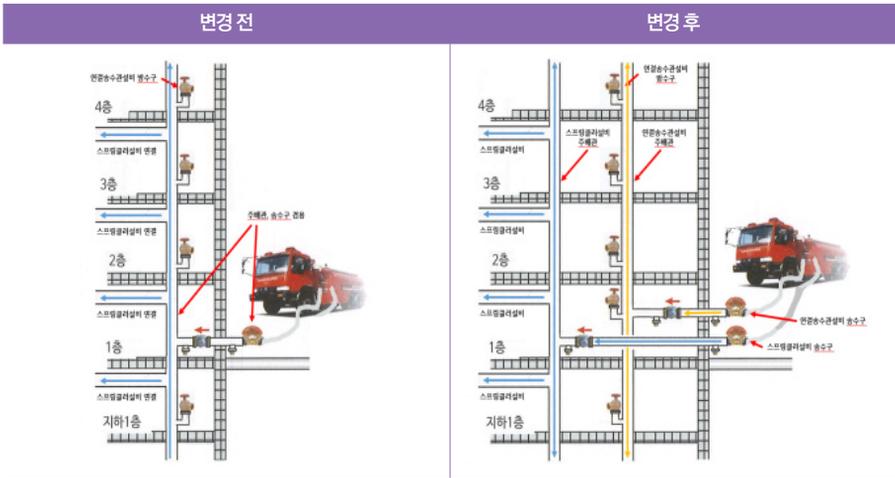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고층건축물 및 지하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여, 자동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작동 중에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수동으로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설비만 겸용 가능함



- 일부 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됩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원활한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함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오픈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032-835-2229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사법기관별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2024년 10월 시행됩니다.

※ 해양경찰청·경찰청·검찰청·법무부 공동 차세대 KICS 진행 중(2021~2024년)

- ❖ 새롭게 구축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 절차 완전 전자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 해양경찰청은 처음으로 독자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인만큼, 해양 환경과 각종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 ❖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형사사법포털 구축으로 사건 조회, 서류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 원거리 해양 도서지역 거주자 분들을 위한 조사 공간 및 사용 디바이스 제약이 없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모바일 기반 해양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관계인들의 불필요한 해양경찰서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 ①형사절차 문서작성 전자화, ②해양경찰 독자적 수사시스템 구축으로 수사절차 간소화등 국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추진배경**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및 사건관계인 사법절차권리보장
- 주요내용**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및 원거리 도서 화상조사 등 해양에 특화된 형사절차 서비스 제공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도서지역 사건관계인 원격조사 및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로 국민편의성 제공
- 시행일** 2024년 하반기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032-835-2606)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검거보상금,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024년 9월 20일 시행됩니다.

- ❖ 그간 해양경찰청은 훈령에 근거하여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복 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상 근거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 ❖ 이에, 2024년 3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도 법률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해양 관련 범인검거 공로자는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범인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 심의절차를 걸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검거보상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1,000만원보다 상향 추진,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여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아울러, 부정지급된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과 손실보상금을 해양경찰청이 환수 가능하도록 개정 됨에 따라, 보상금이 공정하게 지급되고, 오지급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관련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 추진배경** 해양범죄 검거 공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해경위원회 보고 및 부정지급 시 환수
-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032-835-2685)

최근,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 사고* 발생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박의 높이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해상크레인 거제 거가대교 충돌, 미국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등

- ❖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 교량(인천·영종·서해대교)에 적용되었던 선박 높이신고 규정을 부산·여수항 등 주요 항만 선박 통항로상에 있는 교량 및 전선로로 확대하여,
- ❖ 선박 운항자가 교량 및 전선로와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가 재확인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 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해상교량 등 통과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추진배경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 등 구조물과 선박 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미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컨테이너선 충돌 등

주요내용

• 선박의 수면상 높이가 교량, 전선로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 시 자신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관할 VTS에 신고

시행일

2024년 7월 9일(예정)

제주도 전 연안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

그간 제주항 등 항만 위주로 제공되던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 전 연안해역으로 확대하여 연속적 관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확대되는 해역은 서울 면적의 약 13배로 제주도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우선,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운항 선박과 통신상태 및 관제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누리집>보도자료>전국 해상관제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나서...

제주 전 연안해역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VTS 운영

- 추진배경** 제주해역 통항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관제구역 확대) 항만 위주의 관제에서 제주 전 연안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확대하여 관제서비스 제공
※ (기존) 896km² → (확대) 7,804km² (서울 면적의 약 13배)
- 시행일**
 - (시범운영) 2024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 (정식운영) 2024년 9월 1일(예정)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8월 7일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 ①PEF 설립, ②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1/3 미만 겸임, ③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기업 등의 불필요한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유형에만 심사역량이 집중되어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8월 7일부터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므로,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입니다.
- ※ 단, 최종적인 시정조치는 제출된 방안의 내용을 고려(필요시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부과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2)

8월 28일부터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그간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었음

❖ 또한, 기술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 산정 등 입증이 곤란하여 분쟁조정 소송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추진배경 기술 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피해기업의 손해액 등 입증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주요내용

- (손해배상책임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최대 3배 → 5 배)
-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신설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 7월 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

❖ 또한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또한, 가맹점주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 12월 5일부터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에는 즉시 반영하고, 기존 계약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반영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추진배경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으로 지적되어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주요내용 • (법 개정)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
• (시행령 개정)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추가

시행일 2024년 7월 30일(법 개정), 2024년 12월 5일(시행령 개정)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OEM 또는 ODM 제품의 경우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 해야 합니다.

(예: ‘100g → 90g’, ‘100ml → 90ml’ 등)

* 고지의무가 있는 품목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고시됨

** (고지방법 택일) ①제품 포장 등에 표시, ②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③제품 판매장소에 게시

❖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추진배경 제조업자들이 상품의 용량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 방지

주요내용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금지행위)로 추가(제3조의2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3일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그간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업무대행자는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를 분리하여 대행하였으나 업무대행자가 허가 및 신고사용자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참고 : 업무대행자(1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당초	· 허가사용자 15명까지 업무 대행 또는 신고사용자 30명까지 업무 대행
변경	· 허가사용자 10명, 신고사용자 10명 업무 대행 가능 ※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봄

❖ 업무대행자는 허가사용자 1명을 신고사용자 2명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허가 및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신고사용자 기준 30명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허가 및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

- 추진배경**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자 규정 합리화
- 주요내용**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전문가가 위탁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한 방사성물질의 수량, 용도에 따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로 구분
- 시행일** 2024년 4월 25일(허가 및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의 병행 가능)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그간 「원자력안전법」의 원자력관계면허 응시자격 기준일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소방시설법」 등 타 자격의 응시자격 기준일을 참조하여 '필기시험일'로 변경합니다.

〈참고 : 현행 개별법상 응시자격 기준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관계면허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기능장·기사 등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관리사	「수도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일	필기시험일	필기시험일

- ❖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 면허에 대한 응시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응시자격) 제1항의 학력과 경력이며,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응시안내 등으로 이뤄졌던 응시자격 산출 기준일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행정규칙>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 추진배경**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자의 권익 제고
- 주요내용**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변경
- 시행일** 2024년 4월 29일(이후부터) 진행하는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적용 대상이 2024년 9월 15일부터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규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특례규정(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 중립적으로 조문을 개선한 통합된 고시를 시행(2023. 9. 22)한 바 있습니다.
- 위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부칙으로 마련한 약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정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백업 및 복구계획 마련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상세 내용 고시 참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추진배경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2023. 9. 22.) 시 부칙으로 마련한 유예기간 만료

주요내용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고시 적용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환시장 본격 추진	<p>◆ 외환시장 거래시간(제38조)</p> <p>3.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p>	<p>◆ 외환시장 거래시간(제38조)</p> <p>3.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리화 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원칙적으로 은행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첫 영업일은 원화와 미달리화 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한다.</p> <p>☞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한눈에 보는 정책)외환시장구조개선</p>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24.7.1.)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044-215-4714)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지원 개시	<p>◆ 신설</p>	<p>◆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대출, 보증, 투자자금 지원 <p>◆ '24년 하반기부터 지원 개시</p>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4.6.27.)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044-215-7881)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p>◆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제공</p>	<p>◆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콘텐츠와 편의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p>	('24.6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044-215-2991)

기획재정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 신설	<p>◆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 (제공주체) 관세청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p>☞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p>	관세법 (‘24.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 추가	◆ 범위 확대 • 독촉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24.7.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팀 (044-215-4151)

기획재정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신설	◆ 공매 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 (대상) - 공매재산에 대한 전세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사람 •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제출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2023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국세징수법 (‘24.7.1.)
			국세징수법 시행령 (‘24.7.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팀 (044-215-4152)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면제 • 2세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12세 미만 면제 • 12세 미만인 어린이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4.7.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 공항 이용자 1만원, 항만 이용자 1,000원 부과 •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 공항 이용자 7,000원, 항만 이용자 1,000원 부과 •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000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4.7.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진흥지역 안)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 • (진흥지역 밖)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진흥지역 안)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최대 5만원/㎡) • (진흥지역 밖)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20% (최대 5만원/㎡) 	농지법 시행령 (‘24.7.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금액 2억원 이하) 2회 이하 • (부과금액 2억원 초과) 3회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3회 이하 <p>※ (참고)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2024. 5.)</p>	해양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 (‘24.7.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8)

국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좌동) + 비철금속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좌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보전명령 근거 마련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조세특례 제한법 (24.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자)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자)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p>☞ (참고)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자</p>	소득세법 시행령 (24.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국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4백만원 	부가가치세법 (‘24.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 수출자원을 위한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 (현행) 수출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황 • (개정) 그간 경제수준 향상 등을 고려, 기준금액 2배 상황(200만원 → 400만원)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7.1.)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MRO(소모성행정용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제외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전자계약서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시행 • 다만,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물품구매(공급) 경쟁입찰에 해당되는 조달계약 • 「국가계약법」 제2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25조(단기계약) 중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해당되는 계약을 제외한 물품 등의 조달계약 	<p>내자구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부과기준에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지침 추가 (24.7.1. 시행)</p>
			<p>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5)</p>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 (24.5월)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p>조달청 비축업무 운영 규정 개정 (24.5월) (24.7월 시행)</p>
			<p>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209)</p>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형공사) 평가장 내 화면을 통해 실시간 영상 공개 • (참관대상) 입찰참가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전용 채널(바른조달심사) 및 평가장 내 화면을 통해 실시간 공개 • (참관대상) 국민 누구나 <p>☞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대형공사 심의과정 공개, 공정성 의심은 벗고, 부정행위 원천 차단</p>	<p>해당 없음 (*24.6월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평가장 내 화면 또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 공개 • (참관대상) 입찰참가업체 및 사전 참관 신청한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전용 채널(공공주택심사마당) 및 평가장 내 화면을 통해 실시간 공개 • (참관대상) 국민 누구나 <p>☞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조달청, 투명한 '공공주택 심사마당' 본격 운영</p>	<p>해당 없음 (*24.6월 중)</p>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한형 혁신제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하려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매분기마다 시범사용 신청을 받아 시범구매 계약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제한형 혁신제품 중 다용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특허 등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정신청 가능 • 수요기관이나 일반국민 제안공모로 선정된 과제 중 국민생활 밀접, 긴급한 수요 및 공급부족 등 해결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 ◆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시범구매 • 시범사용 시분계획서와 시범사용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받아 시범구매 실시 	<p>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24.4.29. 행정예고)</p>
			<p>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6316)</p>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제3자단가계약을 기업 구분 없이 체결	◆ 제3자단가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 ◆ 중견·대기업·외산 SW 및 중소기업 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중소제 조사는 선택 가능) ☞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 정 및 특수조건 (’24.7.1. 시행)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41)

특허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액납입제 도입 관련 근거 조항 개정	◆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규정 제8조(공제상품의 내용)에 따라 적립형 공제 최저 부금월액을 30만원으로 운영	◆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규정 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 적립형 공제 부금월액을 10만원으로 수정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4. 하반기 시행 예정)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금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여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시행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7.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신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4.7.1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신설	◆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부담 경감 등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4.10.1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금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p>◆ 우수대부업자가 유지 요건에 약간미달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하는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데 한계</p>	<p>◆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최대 2회) 부여</p> <p>*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동 잔액이 75~90%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p>	<p>대부업 등 감독규정 (*24.6.12. 개정, 고시한 날)</p>
	<p>◆ 우수대부업자가 은행 차입금액을 저신용층 신용 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지 관리 감독할 근거 부족</p>	<p>◆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p> <p>☞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24.4.8.~5.20.)</p>	<p>대부업 등 감독규정</p> <p>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p>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p>◆ 신설</p>	<p>◆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 구축</p> <p>☞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 '서민금융 있다'가 나옵니다.</p>	<p>-</p> <p>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p>

금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임원·주요주주가 대규모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거래계획 보고(금감원·거래소)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24.2.28.)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24.7.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개별적인 투자조언이 아니어도 투자자문업 전환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신설 등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반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8.14.~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는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도 이의제기 불가능 ◆ 간편송금 방식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사기범 계좌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한되어 신속한 지급정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는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된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통장협박'으로 검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 (‘24.8.28.)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오피스텔, 빌라담보대출 갈아타기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실시간 시세 조화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확대 <p>☞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김소영 부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p>	해당 없음 (24.9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신설)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대해 시중 최저수준 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로 확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과 함께 신규펀드 8,000억원 추가 조성(총 1.1조원) 및 기존펀드는 7월부터 본격 투자 집행 	산업은행 (24.7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 과거 제도 전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 (기술신용평가) 평가의 현지조사 의무화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 • (품질심사평가)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 (테크평가)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 평가 등 기술금융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표 개편 	신용정보원 (24.7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 재 강화 및 부정수 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 확대	허위·과다 청구자 형사 처벌	-	◆ 허위·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 급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최 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신설	공공재정환수법 (*24.9.27.)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	-	◆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 가능	
	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	◆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 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신청	◆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구조금 신청 가능 •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뉴스·소식)보도자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액 폐지	◆ 최고 30억원	◆ 지급한도액 폐지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뉴스·소식)보도자료)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4.8.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02 교육·보육·가족

교육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CL)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 •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중 • (1~5구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시작 전까지 	<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4.7.1.)</p> <p>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24.7월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 • (이자면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지원 • (대상) 실직·폐업·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 (이자면제) 유예기간 발생 이자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등록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등록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p>	<p>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p>

교육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24.3월 말 기준, 2,83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전국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에서 늘봄학교 운영 ☞ (참고) 교육부 누리집>늘봄학교	(24.9.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606)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영유아 보육 사무 • 복지부 소관	◆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 교육부 소관 ☞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설명· 반박>보도자료>유보통합 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12.8.)	정부조직법 (24.6.27.)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044-203-7192)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체제 구축	◆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학교 행정업무 일부 지원 • 기간제 교원 중심의 인력 채용 지원 • 교역의 학교 보수·공사 지원 • 일부 시도 계약 지원 • 기타 지역 맞춤형 지원	◆ 시·도별 여건에 맞춰 학교지원 전담 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확대 • 강사·교육공무직까지 인력 채용 지원 확대 • 소액의 학교 보수·공사까지 지원 확대 • 계약 지원 범위 확대 • 기타 지역 맞춤형 지원 발굴 확대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95)

여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1.6.10.)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21.7.1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서 양육비이행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명령→제재조치 •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24.9.27)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설립 <p>☞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9.2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긴급주거지원 6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긴급주거지원 17개소 전국 확대 <p>☞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 “내년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p>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월부터 전국 확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와 (02-2100-6427)

여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는 동의 없이 학업중단 정보 연계 가능 ◆ 고등학교 단계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동의 없이 연계 가능 ※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24.9.27)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통합솔루션지원단' 2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1366 통합지원단' 5개소 운영 ※ (참고) 여가족부 누리집 > 보도자료 >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24.2월부터 확대 시행 중)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06)

03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보도참고]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록기준 고시 (*24.7.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7)
긴급돌봄 자원사업 도입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돌봄 자원사업 시행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4.6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9)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	◆ 39개 시·군·구 대상 사업 추진	◆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사업 추진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가제)	'24.7.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36)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 신설	◆ 전국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신부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1308 위기임신부 상담 전용번호가 개설되어 위기임신부가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음 ◆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가명·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24.7.19. 시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9)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09 운영 중 • (참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게' 앱을 함께 안내했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로 통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9.10부터는 자살예방을 위해 기존의 전화 상담(109)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세지, 애플리케이션 등 SNS를 통한 상담도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관련 보도자료 	(24.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9, 3898)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에 전문화되지 않은 기관의 짧은 진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을 제공해 주기적인 상담, 비대면 관리를 제공하고 필요 시 방문진료 실시 	(24.7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불충분,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타 의료기관과 연계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44-202-3537)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p>◆ 시설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 (거실) 면적 제한 없음, 복도식 배치 가능 • (화장실·욕실)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 가능 	<p>◆ 시설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 (거실)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권장 • (화장실·욕실)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p>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4.7.1.)</p>
			<p>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p>
	<p>◆ 인력배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입소자 수 2.3~2.5명 •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입소자 수 3명 • (기타)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업무 없음 	<p>◆ 인력배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입소자 수 2.3명,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장기요양급여 신청 이력 3년 이상 요양보호사 •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입소자 수 2.5명 • (기타)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p>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4.7.1.)</p>
		<p>※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유니트케어시범 사업</p>	<p>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p>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산정 •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의 80% 지원(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산정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의 80% 지원(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p>	고용보험법 시행령 (‘24.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 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지원주기) 3개월 • (지원액)월 최대 20만원 <p>☞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p>	고용보험법 시행령 (‘24.7.1.)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체불사업주 응자 확대	<p>◆ 체불사업주 응자요건</p> <p>①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p> <p>* 기준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p> <p>②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p>	<p>◆ 체불사업주 응자요건</p> <p>① 삭제</p> <p>②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p> <p>☞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24.1.9.)</p>	임금채권보장법 (24.8.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7563)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 신설	<p>◆ 외국인 일학습병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공동훈련센터(대학) • (훈련대상) 전문대·4년제 대학교 유학생(24년 기준) •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및 훈련비 • (추진현황) 외국인 유학생 운영기관 모집 공고(2. 29.) → 운영기관 선발 (6월) → 훈련 시작(9월) <p>☞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주요사업) 일학습병행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공고</p>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8.28. 시행)
			출입국관리법 (23.7.10. 시행)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09)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와 관련없거나 설계 전 시점에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알기 어려운 내용 포함 ◆ 설계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대장 작성 시점 불명확 ◆ 공사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시점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와 관련 없는 항목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 ◆ 설계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 • 가설구조물 중심의 안전계획 수립 ◆ 공사안전보건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전일까지 작성 •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중심 안전조치 작성 <p>※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p>	<p>산업안전보건법</p>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22.7.28.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본격 지원 ('23년 68개소)	◆ '24.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참고) 식약처 누리집 > 보도자료 > 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영양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확대	◆ 3개소(서울, 부산, 대전)설치	◆ 전국 14개소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 재활동 (043-719-2582)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제공 의무화	◆ 신설	◆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을 통해 의약품 허가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734) 의약품관리과 (043-719-265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 66개(알로푸리놀 등)에 대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확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5)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 적용</p>	<p>◆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대상업소 등 인증 완료 	<p>◆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 HACCP 인증 <p>☞ (참고) 식약처 누리집)보도자료) 수입 배추김치, 해설향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p>	<p>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26)</p>
<p>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서류검토 자동화 도입</p>	<p>◆ 신설</p>	<p>◆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심사시 외국어 번역·중복등록 등 검토·현지 주소 검증 과정에 대한 자동서류 검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p>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9)</p>
<p>위생용품 수출 영문증 명서 발급 제도 시행</p>	<p>◆ 신설</p>	<p>◆ 위생용품의 수출 자유판매증명서 (영문) 발급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식약처)을 발급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p>	<p>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5)</p>

통계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표준직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 고시 '17.7월/시행 '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 고시 '24.7월/시행 '25.1월 <p>☞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p>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고시일 동일)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7)
한국표준건강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 고시 '16.12월/시행 '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 고시 '24.7월/시행 '25.1월 <p>☞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p>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고시일 동일)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204)

질병관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 시행	<p>◆ 복약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염성 결핵환자 • (기간) 전염성 2주간 *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집중치료기 6개월간(시범) • (주기) 2주간 매일 *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1개월 매일, 2~6개월 주1회 	<p>◆ 복약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체 결핵환자 • (기간) 치료 종료시까지 • (주기) 취약성평가를 통해 위험도 (저,중,고)에 따른 주기 결정 	결핵예방법 (24.6.1.)
	<p>◆ (신규)</p>	<p>◆ 다제내성결핵 집중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다제내성결핵환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사례관리회의 - 치료약제구성관리 (신약 사전심사 안내 및 미준수의료기관 약제구성 컨설팅 지원) <p>☞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보도자료>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관리 해드립니다</p>	<p>결핵예방법 (24.6.1.)</p> <p>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29)</p>

질병관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매개감염병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p>◆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의거한 서식으로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p> </div>	<p>◆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들에게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신설 및 건강진단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p> </div>	<p>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24.6월 개정/ '24.7월 시행 예정)</p>
	<p>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043-719-7331)</p>		

04 문화·체육·관광

외교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 발급 비용 인하	<p>◆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구분</th> <th>국제교류기여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전자 여권</td> <td rowspan="3">복수 여권</td> <td>5년 초과 10년 이내</td> <td>15,000원</td> </tr> <tr> <td rowspan="2">5년</td> <td>만8세 이상</td> <td>12,000원</td> </tr> <tr> <td>만8세 미만</td> <td>-</td> </tr> <tr> <td>5년 미만</td> <td>-</td> </tr> <tr> <td>단수 여권</td> <td>1년 이내</td> <td>5,000원</td> </tr> <tr> <td>비전자 여권</td> <td>긴급 여권</td> <td>1년 이내</td> <td>5,000원</td> </tr> <tr> <td>기타</td> <td>여행증명서</td> <td>2,000원</td> </tr> </tbody> </table>	종류	구분	국제교류기여금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15,000원	5년	만8세 이상	12,000원	만8세 미만	-	5년 미만	-	단수 여권	1년 이내	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5,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000원	<p>◆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후</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구분</th> <th>국제교류기여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전자 여권</td> <td rowspan="3">복수 여권</td> <td>5년 초과 10년 이내</td> <td>12,000원</td> </tr> <tr> <td rowspan="2">5년</td> <td>만8세 이상</td> <td>9,000원</td> </tr> <tr> <td>만8세 미만</td> <td>-</td> </tr> <tr> <td>5년 미만</td> <td>-</td> </tr> <tr> <td>단수 여권</td> <td>1년 이내</td> <td>0원</td> </tr> <tr> <td>비전자 여권</td> <td>긴급 여권</td> <td>1년 이내</td> <td>0원</td> </tr> <tr> <td>기타</td> <td>여행증명서</td> <td>0원</td> </tr> </tbody> </table>	종류	구분	국제교류기여금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12,000원	5년	만8세 이상	9,000원	만8세 미만	-	5년 미만	-	단수 여권	1년 이내	0원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0원	기타	여행증명서	0원	<p>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24.7.1.)</p> <hr/> <p>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p> <p>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02-2100-8104)</p>
	종류	구분	국제교류기여금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15,000원																																																
		5년	만8세 이상	12,000원																																															
			만8세 미만	-																																															
	5년 미만	-																																																	
단수 여권	1년 이내	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5,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000원																																																	
종류	구분	국제교류기여금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12,000원																																																
		5년	만8세 이상	9,000원																																															
			만8세 미만	-																																															
	5년 미만	-																																																	
단수 여권	1년 이내	0원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0원																																																
기타	여행증명서	0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p>◆ 정부24를 통해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 앱·웹을 통해 신청 	<p>◆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채널뿐 아니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p>※ (참고) 외교부 누리집 보도자료)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앱에서도 된다고?</p>	<p>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23.4.18.)</p> <hr/> <p>외교부 여권과 (02-2002-0188)</p>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행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한시 완화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한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 휴업 중에도 보증보험 등 가입 유지 필요 • 여행업 휴업 통보한 후에도 보증보험·공제·보증금 등 유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중 보증보험 해약 가능 (‘26.6월 말까지) • 여행업 휴업을 통보한 이후 6개월 경과 시 보증보험 등 해약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4.7.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 기준 1,500만원 충족 필요 •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 기준 1,500만원 충족 증빙자료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 기준 750만원으로 완화 (‘26.6월 말까지) • 국내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 기준 750만원 충족 증빙자료 제출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24.7.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2)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p>☞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p>	국민체육진흥법 (‘24.8.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44)
	◆ 과태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보도자료 > 메크로 이음편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p>	국민체육진흥법 (‘24.9.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44)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없음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24.12월 예정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누리집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9)

국가유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50년 이상 문화유산을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 • (등록기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 • (선정기준)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 (참고) 국가유산청 누리집)새소식) 보도/설명)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4.9.15.)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042-481-4912)

05 환경기상

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 : '08.1.1.부터 15,1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 : '24.7.1.부터 7,600원 ☞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24.7.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 허용 총량 이월 가능 ◆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 받은 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 차입 가능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의2 ('24.8.17.)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2)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 (외부 감축활동)으로 저감한 감축량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가능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의3('25.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2)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할당 가능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할당 취소 가능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24.8.17.)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2)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신규사업장 할당 등의 목적으로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사용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4 ('24.8.17.)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2)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 수도권·충청권·호남권 (11개 권역) 대상 36시간 전 PM-2.5 일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 전국(19개 권역) 대상 36시간 전 PM-2.5 일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24.2.17.)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 7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 위험지역 알림('24.7월부터) • 홍수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알림 	- 내비게이션 알림 ('24.7.4.) 안전안내문자 ('24.5.15.)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안전안내문자 제공 • 홍수특보 발령 사항(하천수위 정보) 텍스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시 입체적 정보 제공('24.5월부터) •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활용 본인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 우려지역 정보 제공('24.5월부터) <p>☞ (참고)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 보도·설명)여름철 홍수대책</p>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652)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안전법」상 공개 (의무) • 명칭·주요성분 등 제품 신고 정보 • 행정처분 관련 정보 등 위반 사실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없음 	- ('24.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안전정보 공개(자율) • 기업 자율로 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제공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 682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중수도설치 신고 • 설치 후 30일 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중수도설치 신고 •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 등) 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7.24.)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 7024)
「물순환촉진법」 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순환촉진법」 주요 내용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지정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물순환 실태조사)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 •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운영)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업무 지원 •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하여 인증 	<p>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10.25.)</p> <p>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46)</p>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신설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수도법 (*24.7.17)																																
			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19)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확대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 (대상)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 (대상)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국가간이동법 (*24.10.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감면대상</th> <th>감면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중소기업 연매출액</td> <td>10억 미만</td> <td>100</td> </tr> <tr> <td>10억~50억</td> <td>90</td> </tr> <tr> <td>50억~100억</td> <td>80</td> </tr> <tr> <td>100억~200억</td> <td>70</td> </tr> <tr> <td>200억~400억</td> <td>60</td> </tr> <tr> <td>400억~600억</td> <td>50</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비율 (%)	중소기업 연매출액	10억 미만	100	10억~50억	90	50억~100억	80	100억~200억	70	200억~400억	60	400억~600억	50	◆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감면대상</th> <th>감면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중소기업 연매출액</td> <td>10억 미만</td> <td>100</td> </tr> <tr> <td>10억~50억</td> <td>90</td> </tr> <tr> <td>50억~100억</td> <td>80</td> </tr> <tr> <td>100억~200억</td> <td>70</td> </tr> <tr> <td>200억~400억</td> <td>60</td> </tr> <tr> <td>400억~1,000억</td> <td>50</td> </tr> </tbody> </table> ≡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	감면대상		감면비율 (%)	중소기업 연매출액	10억 미만	100	10억~50억	90	50억~100억	80	100억~200억	70	200억~400억	60	400억~1,000억	5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4.7.1)
		감면대상		감면비율 (%)																															
중소기업 연매출액	10억 미만	100																																	
	10억~50억	90																																	
	50억~100억	80																																	
	100억~200억	70																																	
	200억~400억	60																																	
	400억~600억	50																																	
감면대상		감면비율 (%)																																	
중소기업 연매출액	10억 미만	100																																	
	10억~50억	90																																	
	50억~100억	80																																	
	100억~200억	70																																	
	200억~400억	60																																	
	400억~1,000억	5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총 7종) 1.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2. 부동액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 6. 플라스틱 제품 7. 고흡수성수지 병매 사용 아이스팩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총 6종, 껌 제외) 1.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2. 부동액 3. 삭제 4. 1회용 기저귀 5. 담배 6. 플라스틱 제품 7. 고흡수성수지 병매 사용 아이스팩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인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7.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 말소를 신청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마.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24.7.2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5)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 신설	◆ 해양·극지 분야 관측망 구축, 감시·예측 정보 생산 • 국민체감형 해양·극지 분야 감시예측 통합정보 생산·제공 ☞ (참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4.7)	기후변화감시예측법 (‘24.10.25.)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44-200-6268)

기상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진도 기반 사·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 지진 규모 기준의 광역사도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진도 기반의 사·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세분화 제공 ☞ (참고) 기상행정 누리집)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③	- (‘24.10월)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3)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 오전·오후 단위의 날씨정보 제공 • (제공방법) 오전·오후 단위, 강수유무 정보 제공	◆ 시간 단위 날씨정보 최대 5일까지 연장하여 제공 • (제공방법) 오늘~4일째 1시간 단위, 5일째 3시간 단위로 제공, 예상강수량 및 예상적설에 대해서는 정량정보와 정성정보 함께 제공 ☞ (참고) 날씨누리(기상청 누리집) 및 날씨알리미(기상청 공식 앱)	기상법 시행령 예보업무규정 (‘24.11.28.)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기상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 활용 등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4.10.25.)
			기상청 기후정책과 (042-481-7376)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도로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관측자료 및 기상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기상관측망 확충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고속도로 대상노선 : (23.)2개 → (24.) 7개 노선 ※ 서비스 내비게이션 : (23.) 티맵·카카오내비 → (24.) 아틀란 추가 	- (24.12월)
			기상청 관측정책과 (02-481-7341)
산업분야 수요 맞춤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분야 중심 데이터 서비스 • 같은 바람데이터도 관측데이터는 '관측'에서, '예보데이터'는 예보 부문에서 별도 제공 • 기상 및 방재에 초점을 맞춰 기상관측지점별 데이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산업 분야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 (분야 특화 서비스) 같은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면, '관측', '예보' 구분 없이 한곳에서 제공 • (수요 맞춤형 묶음 서비스) 사회·산업 분야 활용 수요에 맞춰 분야 특화 지점별 데이터 묶음 서비스 <p>☞ (참고) 기상행정 누리집 보도자료)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⑥</p>	- (24.10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42-481-7475)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4.11.1. 시행) •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진흥 체계 구축 •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 수립 •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허브 구축 • 양자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 • 양자 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 촉진 •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p>☞ (참고)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p>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 (‘24.11.1.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과 (044-202-68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 신설	<p>◆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24.8.28.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p>☞ (참고)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p>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4.8.28.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간편인증 도입 시행	<p>◆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법제화 운영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등 (인증항목, 수수료) 인증항목 80개, 수수료 800~1400만원 	<p>◆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취지)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부담 완화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 (인증항목, 수수료) 인증항목 40개/44개, 수수료 400~700만원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집적정보통신 시설 보호지침」 시행	◆ 재난 예방·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재난 확산 방지) 배터리실은 UPS 장비와 통합하여 관리 되어도 무방 • (수해 방지)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에 방수시공 실시 	◆ 재난 예방·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사전탐지) (신설) 리튬배터리 사용 시설은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BMS) 설치 및 재난 사전탐지를 위한 보조적시스템 병행 운용 의무 부과 • (재난 확산 방지) (변경) 리튬배터리 사용 시설은 배터리실을 전력선, UPS 등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 (수해 방지) (추가) 주요시설 지하공간 위치 시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 설치 	집적정보통신 시설 보호지침 시행 (‘24.6.1. 시행)
	◆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신설 	◆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신설) 전력 차단 필요시 차단구역을 최소화 하고, 단계별 차단방안 수립 • (예비전력설비 이중화) (신설) 재난 시에도 서버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예비전력 설비의 이중화체계를 갖추도록 함 	
	◆ 재난 대비 역량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계획·업무연속성 계획 내실화) 목적·범위, 조직·인력 구성·운영, 교육·훈련, 침해사고 예방·대응·복구대책 등 포함 • (모의훈련 실효성 강화) 없음 	◆ 재난 대비 역량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계획·업무연속성계획 내실화) (추가)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구체적 전력 유지체계, 설비 운용 방안 등 포함 • (모의훈련 실효성 강화) (신설)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등 관계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행정규칙)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7)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개정 기업활력법」 본격 시행	◆ 한시법(24.8월 일몰)	◆ 상시법 전환	기업활력법 (24.7.17)
	◆ 사업재편 지원 유형: 5개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사업재편 지원 유형: 6개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2개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6개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 사업재편 지원체계 •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운영(서울 중구, 대한상의)	◆ 사업재편 지원체계 강화 •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7개 권역 순차 지정) •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로 대·중견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 참여 촉진 ※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누리집 법령)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44-203-4231)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24.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2)
「미래자동차부품 산업법」 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법률 부재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참고자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 (‘24.7.10.)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산업용지만 임대 불가	◆ 산업용지만 임대 일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24.7.10.)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 제한 적용	◆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24.7.10.)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불가	◆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일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설립 신고 등이 완료된 자산에 한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24.7.10.)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등록기준 미달 사유와 제재처분 유예 기한 설정	◆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 전력시설물 설계업과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 단,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 유예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4.8.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 정의에 포함	◆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전기공사에 전기설비 등을 해체하 는 공사도 포함하되, 해체공사는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에 한하여 포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24.8.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K-마크) 제도 폐지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관련 규정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로 관련 규정 삭제(안 제43조 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6호, 제55조제1항,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제7호, 제66 조제1항제4호·제5호·제4항, 제67 조제13호·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제76조제2항제7호·제18호)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7.10.)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 연구개발,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우선 지원 •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융복합단지로 입주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융복합단지로 입주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설비보조금 등 지원비용 가산 가능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공고>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p>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6)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중동산 원유 수입시 석유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가 '24년 일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를 3년 연장 (~27년)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사업법 시행령 (24.8.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p>◆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포괄적으로 규정</p>	<p>◆ 석유대체연료의 용도를 기존의 정의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된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 합성연료, 기타연료로 세분화</p>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p>	<p>석유사업법 (24.8.1)</p>
	<p>◆ 석유대체연료 지원근거 부재</p>	<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의 탄소감축,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사업 지원을 위해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p>	<p>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p> <p>석유사업법 시행령 (24.8.1)</p> <p>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p>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석유 이외의 친환경 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	◆ “석유정제업”을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석유 이외의 물질은 투입 불가	◆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하도록 하고,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 상세 규정 •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 정제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4.8.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재난상황 대응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소방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 금지	◆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4.8.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3)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 발전용: 톤당 3,800원 • 발전용 외: 톤당 24,242원	◆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를 3년 연장 (~’27년) • 발전용: 톤당 3,800원 • 발전용 외: ’24.7월~’25.6월까지 톤당 16,730원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1.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인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4.7.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 도입 시 컨설팅, 금융,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 신청, 지원받아야 함	◆ 한국해양진흥공사 내 친환경선박 도입 One-Stop 지원 T/F를 통해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 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	없음 (2024.6.1.)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에만 인증 •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 부재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에 추가하여 기자재까지 인증 • 정부 공인 인증마크 신설  인증마크(안)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고시 개정 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24.7월 공표 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 신설	◆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또는 제품에 대한 확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부재	◆ 해양수산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하도록 적용한 제품, 공사 등에 대한 확인 기준, 절차 등 체계 마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 (‘24.9.1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044-200-6222)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 GPS(위성항법시스템)의 위치 오차는 10m 수준이며, 기존 고정밀 측위 체계는 해양에서 사용하기에 한계	◆ GPS 위치오차를 대폭 줄여 해양의 고정밀 항법용으로 개발한 위치 서비스 제공 (오차 10m→5cm)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오차범위 10cm 이하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개발	항로표지법 (21.4.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 자본금 • 3억원 이상 확보할 것	◆ 자본금(시행일로부터 2년간) • 2억원 이상 확보할 것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검색(항로표지법 시행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24년 7월~)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5)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기준) • 주차장 운영업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범위 확대) • 주차장 운영업 • 전기판매업 • 운송장비용 가스 판매업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배후단지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보도예정)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24.12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②(생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②(현행과 같음)	중소기업기본법 (’24.8.2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5년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신설	◆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요건 및 기준)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 (지원사업)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7.17.)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통계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 고시 '17.1월, 시행 '17.7월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 고시 '24.1월, 시행 '24.7월 ☞ (참고) 통계분류포털) 공지사항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고시일 동일)
			통계청 통계기준과 (042-481-2052)

특허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 특허권 침해: 3배 • 영업비밀 침해: 3배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특허권 침해: 5배 • 영업비밀 침해: 5배 • 아이디어 탈취행위: 5배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24.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 처벌 • 벌금형: 행위자와 동일 • 공소시효: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 처벌 강화 • 벌금형: 행위자 대비 3배 • 공소시효: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삭제·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 없음 (정보통신망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삭제·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적용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수 규정 • 없음 *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규정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수 규정 신설 •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규정 적용 동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 •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확대 • 비밀로 관리된 데이터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되, 그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 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권고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시 강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부정경쟁방지법 ('24.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개선 •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절차를 마련 <p>☞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p>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영업비밀 유출범죄 관련 강화된 양형기준 시행	<p><영업비밀 침해죄 양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 ~10월 • 기본: 8월~2년 • 가중: 1년~4년 ◆ 해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 10월~1년 6월 • 기본: 1년~3년 6월 • 가중: 2~6년 	<p><영업비밀 침해죄 양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 6월~1년 6월 • 기본: 10월~3년 • 가중: 2년~5년 ◆ 해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 10월~3년 • 기본: 1년 6월~5년 • 가중: 3~8년 <p>☞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p>	대법원양형기준 ('24.7.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특허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의 권한이 반도 체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p>	<p>〈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p> <p>◆ 분쟁조정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행위 <p>◆ 심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p>〈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p> <p>◆ 분쟁조정 사항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행위 5. 배치설계권(신설) <p>◆ 심의사항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 용권 설정의 재정(신설) <p>☞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p> <p>☞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p>	<p>발명진흥법 (‘24.7.31.)</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p>

특허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승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의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더라도 모든 직무발명 각각에 대해 승계여부를 종업원에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승계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승계절차 간소화 	발명진흥법 (‘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보상액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근거 미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가 실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신청 가능 	발명진흥법 (‘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유효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시에는 재인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적으로 3년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2년간(‘24. 8. 7.~’26. 8.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p>※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기업과 종업원이 상생 협력 하는 직무발명 법 개정으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p>	발명진흥법 시행령 (‘24.8.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 5920)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케팅데이터 서비스 상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케팅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가 임시허가(2년)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7.24.부터 상시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기존 임시허가 사업자는 시행일 (‘24.7.24)로부터 1년 이내(~’25.7.24.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함 <p>※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p>	정보통신망법 (‘24.7.2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 1520)

0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 신설	<p>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① 시장·군수등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 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2.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교통·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1기신도시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p>	<p>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4.27)</p>
			<p>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1)</p>
공간혁신구역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전 국토의 토지규제 기준인 용도지역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 구역(용도구역) 3종 도입 • (자정 절차)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시·군)→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시·도) • (규제효과)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등 전면 완화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국토계획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8.7)</p>
			<p>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p>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신설	◆ 도시·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지별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4934)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	◆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층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주택법,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24.7.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	◆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전년도 바닥층격음 성능검사대상 주택건설 사업 준공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의 명단을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가능 ※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주택법,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24.7.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 공동주택 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주택법, 주택도시 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주택법 (24.7.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모바일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 방문(주택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 온라인(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 방문(주택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 온라인(PC) • 모바일 <p>※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p>	- (24.8월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건설현장 품질검사 시스템 의뢰 및 결과입 력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직접 시행 품질검사 결과의 자체 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검사 대장 등을 통한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 정보망에 품질검사 결과의 입력 <p>① 품질검사 시행일, 시험종목, 기준 등 품질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자 등을 포함한다)가 확인한 품질검사 결과</p>	건설기술 진흥법 (24.7.10.)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3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대행 의뢰 • 자체적인 방법으로 계약 및 품질검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망을 통한 대행 의뢰 •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서 제출 후 품검기관 선정하고 품질검사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24.7.10.)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3580)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p>◆ 안전점검등의 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정밀안전진단)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p>◆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24.7.17.)</p>
			<p>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6)</p>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용 완화	<p>◆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다른 용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주차장의 비율 70퍼센트 이상 	<p>◆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다른 용도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주차장의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 60퍼센트 2. 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70퍼센트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 보도자료>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지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p>	<p>주차장법 시행령 (‘24.8월 공포 시)</p>
			<p>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p>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까지 • (활주로) 3본 • (제2여객T) 387,000㎡ • (여객계류장) 163개소 • (화물계류장) 49개소 • (BHS) 141km • (T2교통센터) 185,000㎡ • (주차장) 22,391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건설 완료 시 • (활주로) 4본 • (제2여객T) 737,000㎡ • (여객계류장) 225개소 • (화물계류장) 60개소 • (BHS) 184km • (T2교통센터) 272,000㎡ • (주차장) 48,297면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공항공정책과 (044-201- 4264)
수하물 배송 위탁서비스(이지드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드랍 서비스 제공 구역 • 서울 홍대 홀리데이인 호텔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패스 서비스 제공 구역 • 서울 강남역 또는 잠실역 인근 호텔, 인천 영종도 인스피어 리조트에서도 이용 가능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 4238)
월간항공소비자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리포트 최초 발간 • (대상) 국적항공사 및 외국적항공사 • (주요내용) 노선별 시간대별 정시성, 소비자 피해 사례 등 • (발간단위) 매월 • (공개형태) 국토교통부 누리집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 4231)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작권지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가능 	<p>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지원에 관한 법률 (‘24.7.10.)</p> <p>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52)</p>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 •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 	<p>자동차등록령 (‘24.6.18.)</p> <p>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p>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휴게소 • 3곳 * 호남선 정읍휴(천안), 남해선 진주휴(부산), 영동선 덕평휴(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휴게소 • 8곳(‘24년 5곳 추가) * 호남선 정읍휴(천안) 남해선 진주휴(부산) 영동선 덕평휴(북한) 경부선 추풍령휴(부산)(6월) 광주대구선 강천산휴(광주)(9월) 광주대구선 논공휴(대구)(9월) 제2중부선 이천휴(하남)(12월) 순천완주선 춘향휴(완주)(12월) 	<p>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2)</p>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서해선(송산~홍성) 등 7개 일반철도 개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선(홍성~송산)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4.10월/ 홍성~송산/90.0km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52, 3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승~평택 1단계 • 개통일/구간/연장: '15.2월/ 숙성~평택/13.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승~평택 2단계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4.10월/ 안중~숙성/9.4km ※ 3단계(포승~안중, 7.5km)는 '30년 이후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선 1단계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4.10월/ 신창~홍성/36.4km ※ 2단계(82.2km)는 '27년 개통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문경 1단계 • 개통일/구간/연장: '21.12월/ 이천~충주/54.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문경 2단계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4.12월/ 충주~문경/39.2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담~영천 1단계 • 개통일/구간/연장: '22.7월/ 도담~안동/73.8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담~영천 2단계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4.12월/ 안동~영천/71.3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삼척 1단계 • 개통일/구간/연장: '18.1월/ 포항~영덕/38.1km * 비전철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삼척, 포항~동해 • 개통예정일/구간/연장: '25.12월/ 포항~동해/172.8km * 전철화개통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구미~대구~경산)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전 구간 공사 중 • 광역철도 미운행 (일반철도 평균 1시간 1대 운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구미~대구~경산) 개통 • '24.12월 개통 - 출·퇴근 시간 전동차 투입 교통편의 향상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p>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82)
GTX-A 운정-서울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전 구간 공사 중 • 수서-동탄 79분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 파주 운정-서울역 50분 이상 소요(지하철, 버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개통 • 3월 수서-동탄 개통 - 수서-동탄 20분 소요 •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 운정-서울역 20분 소요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3981, 397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공동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축사업은 건축연면적 산정시 제외 규정 없음 <p>※ 부과산식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공동시설 등은 제외 <p>※ 부과산식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지하층, 학교, 청사, 주민공동시설, 복리시설 등 면적 제외)} - 공제액</p>	<p>광역교통법 시행령 (하반기 중)</p> <hr/> <p>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 5050)</p>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 가격 제한 완화	<p>◆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p> <p>「혁신도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신설). <p>「혁신도시법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 양도가격 제한 기간 설정</p> <p>「혁신도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혁신도시법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③ 법 제5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p>혁신도시법 시행령 (‘24.8.21.)</p>
	<p>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89)</p>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만건설촉진법」 내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타당성 검증 등 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해수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하고 ◆ 해수부는 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 승인토록 제도 정비 	<p>신항만건설촉진법 (24.7.24.)</p> <hr/> <p>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44-200-5914)</p>
해외물류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간합작 물류센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작 물류센터 4개소 운영 •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니 프로볼링고, 수라바야에 물류센터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합작 물류센터 2개소 추가 및 1개소 확대 운영 • 미국 LA(24.10월), 베트남 호치민(24.12월)에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인니 프로볼링고의 물류센터는 규모 확장(4,000→10,000㎡)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관련 보도자료 (게시 예정)</p>	<p>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7)</p>

08 농림·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난개발·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으로 정책 틀 전환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사업 집중지원으로 주거지역 생활SOC 확충, 산업기반 활성화 등 추진 • 각 지자체·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을 위한 국비사업 통합 지원 (5년간 최대 300억원) <p>☞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p>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4.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6)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 등 심의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 전·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 	개식용종식법 (’24.8.7)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수직농장 농지 입자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8년 (최초 5년+연장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기간 확대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16년 (최초 7년+연장 3년*3회) 	농지법 시행령 (’24.7.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9)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준)주기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2024년 9월 내로 결성합니다. • 시행일 2024년 9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2024년 10월 내로 결성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0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파머스 펀드 • 1차 생산 또는 가공·유통 등 융복합화 추진 청년기업 • 청년 기준: 만 4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업 성장펀드 ① 창업 초기단계: Start-up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보육 등을 가진 창업 7년 이내 농식품·전후방산업 종사 청년기업 • 청년 기준: 만 39세 이하 ②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전후방산업 종사 청년기업 • 청년 기준: 만 49세 이하 ③ 후속투자유치 단계: Scale-up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이력이 있는 청년기업 • 청년 기준: 만 49세 이하 <p>☞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p>	'24.7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고병원성 시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병원성 시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 농장의 가금에 대하여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24.10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농산물 온라인도매 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명) 농산물 온라인도매 시장 ◆ (거래품목)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 (거래품목) 수산 추가 ⇒ 거래 품목의 다양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4.5.22) <p>☞ (참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kafb2b.or.kr)공지사항) 업무규정 개정 안내</p>	('24.5.2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신설	◆ 안전사고, 범죄발생 및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는 특정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참고) 농식품부 누리집<소식>그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 시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24.7.3. 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3)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 농촌융복합시설에 한해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 하는 입지구제 특례 규정 (제8조의3) •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까지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7.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 및 법 시행)	◆ 사회적 농장, 지역서비스 공동체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 운영(’24.8.17. 이후) •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 요건을 갖추면 농식품부, 지자체 지정 ◆ 전국지원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서비스 제공 활동 체계적 지원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 (’24.8.1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신설	<p>◆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 (인력양성)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조성) 기술 개발·실증, 기자재 검정, 표준화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거점단지 지정 • (보급·확산) 육성지구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 수출 지원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p>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7.26.)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24.7.26.)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 2421)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개시	◆ 신설	<p>◆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 •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규모 무인 농업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에서 미래 농업기술 선점·경쟁력 확보 • 청년 창업농 활성화, 고령·여성농업 인의 노동 생산성 제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기대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 (예정)</p>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일 (*24.6.12.)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 총자과 (044-201-1896)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내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 설치가능 부지면적: 660㎡ 이하 단,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추가설치 시 1,000㎡ 이하	농지법 시행령 (24.7.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9)
농지대장 이용 정보 온라인 변경 신청 도입	◆ 농지소재지방문을 통한 임대차·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신고만 허용	◆ 온라인으로 농지임대차·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신고(정부24)로 민원인 편의 제고 • 편리한 신고로 농지대장 정보 현행화 촉진 및 농지대장 정보 정확도 향상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24.9.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 신설	◆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총 30개소) • '24.6월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6)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비용 지원	◆ 신설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비용 지원('24년~) • (지원내용) 절임염수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 일체 * 구조토자동여과장치, 오존도산화 처리장치, 오존발생장치, 거품분리기 및 부대시설 등 • (예산) 총 사업비 50억원 * 개소당 2.5억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중소 김치 제조업체	'24.7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3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 조건 제한 완화	◆ 신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조건 제한 완화 • 글로벌식품기업준의 최소 분양면적 (1만평) 제한 없이 필지별로 분양 허용 - 최소 분양면적 제한기준 완화: 1만평 이상 → 필지별(1,100~8,000평)	'24.5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 (044-201-2187)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운영	◆ 신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운영 • 식품 분야 청년창업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센터' 신규 개소 -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창업 편의시설* 제공 * 사무실(14실), 임대형공장(10실), 시제품제작실(1실), 기숙사(44실), 회의실(9실), 콘서트홀, 멘토링센터, 촬영스튜디오, 창업정보 자료실, 재료창고 등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 (044-201-2182)
식품창업 등을 위한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오픈	◆ 신설	◆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오픈하여 식품창업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식품원료, 식품기술, 전문인력, 시설·장비 보유기관 등 * www.foodpolis.kr	'24.5.28.~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 (044-201-218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GMP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 신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된 시설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농축산용 미생물기업에게 제품의 생산 지원 • (사업시행주체) (재)농축산용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전북 정읍 소재)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0)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개발 지원	◆ 신설	◆ 기능성원료 공급체계 구축 •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의 가공 공정 개발 및 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원료 인정 위한 컨설팅 실시 • 원료 비축 및 분양 활성화 • 기능성표시식품 기업 대상 제품 개발 지원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8)
가루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 가루쌀 백미 1kg당 1,540원에 공급	◆ 가루쌀 백미 1kg당 1,000원에 공급 (kg당 540원 인하)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 육성팀 (044-201-2912)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 신설	◆ 쌀가공산업 수출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 (지원대상)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24.7.24.)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 육성팀 (044-201-2912)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청 창구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 사용내역, 잔액 등 조회 서비스 제공 - (기존) 방문신청 -> (개선) 온라인 신청 추가 *'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일부 지자체 시범 운영 예정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농산물 물류기기의 이용료 공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기기 이용료 비공개 물류기기 임대 시장이 일부 업체 독과점 운영 이용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가격 비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하여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 의무화" 규정 신설 ⇒ 업체 간 경쟁 유도,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물류기기 이용 가능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으로 버섯 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 배경 버섯 산업 발전과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 및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 버섯 임의자조금 도입으로 버섯의 소비 촉진, 수급안정 및 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기대 * 출범일: '24.하반기 	('24.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축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저탄소 축산물(한우) 인증제 시범사업 도입 저탄소 한우 인증 7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돈, 낙농에도 저탄소 인증 도입 (전체 축종 150호 목표) 6-7월 신청분야 하반기 인증 및 저탄소 돼지고기, 우유 출시 계획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보도자료>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24.6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65)
국내 수출업체 애로 해소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 창구 마련 지역별 수출정보데스크(at) 운영을 통해 민-관 소통강화 및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파악·해소 	('24.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2)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 증서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 발급 • 어업인이 어선검사를 신청할 경우, 어선검사원이 검사완료 후 현장 또는 어선 검사사무소에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직접 수령 후 선내 등에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방식의 어선검사증서 발급 • 어업인이 어선검사를 신청할 경우, 어선검사원이 검사완료 후, 전자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자검사증서 발급, 분실 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재발급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어선검사증서 디지털 전환('24.6월 예정) 	<p>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제정 ('24.6월)</p> <hr/> <p>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p>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 제20조(거래품목) ①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 한다. 1. 양곡부류 2. 청과부류 3. 축산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 제20조(거래품목) ①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 한다. 1. 양곡부류 2. 청과부류 3. 축산부류 4. 수산부류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동정) 5.24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p>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규정</p> <hr/> <p>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057)</p>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신규 양식면허는 원칙적으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김 양식 면허를 발급 하여 공급물량 확대 •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신규 양식 면허는 7월부터 발급 예정(각 시·군·구) * 전남, 충남 등 주요 생산지 연안에 김 양식장 2,700ha 신규 개발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7월 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24.4.25.) 	<p>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 사업 참여 전 • 연안통발 그물코 규격 (22mm) •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크기 (20m)	◆ 사업 참여 후 • 연안통발 그물코 규격 (18mm) •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크기 (35m)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규제완화 시범사업 ('24.7.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다년제 TAC 적용	◆ 단년제 TAC • 1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여 풍어·흉어 등 상황에 유동적 대응 곤란	◆ 다년제 TAC 도입(고등어) •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여 유동적인 대응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24.7월 TAC 시행 계획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 ('24.7.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유럽 수산식품 수출거점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 해외 무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국가</th> <th>지역</th> <th>운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중국</td> <td>상해</td> <td rowspan="10">7개국 10개소</td> </tr> <tr> <td>청도</td> </tr> <tr> <td>홍콩</td> </tr> <tr> <td rowspan="2">미국</td> <td>LA</td> </tr> <tr> <td>뉴저지</td> </tr> <tr> <td>일본</td> <td>도쿄</td> </tr> <tr> <td>대만</td> <td>타이베이</td> </tr> <tr> <td>베트남</td> <td>호치민</td> </tr> <tr> <td>태국</td> <td>방콕</td> </tr> <tr> <td>인니</td> <td>자카르타</td> </tr> </tbody> </table>	국가	지역	운영	중국	상해	7개국 10개소	청도	홍콩	미국	LA	뉴저지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니	자카르타	◆ 해외 무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국가</th> <th>지역</th> <th>운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중국</td> <td>상해</td> <td rowspan="10">8개국 11개소</td> </tr> <tr> <td>청도</td> </tr> <tr> <td>홍콩</td> </tr> <tr> <td rowspan="2">미국</td> <td>LA</td> </tr> <tr> <td>뉴저지</td> </tr> <tr> <td>일본</td> <td>도쿄</td> </tr> <tr> <td>대만</td> <td>타이베이</td> </tr> <tr> <td>베트남</td> <td>호치민</td> </tr> <tr> <td>태국</td> <td>방콕</td> </tr> <tr> <td>인니</td> <td>자카르타</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f0ff;"> <td>프랑스</td> <td>파리</td> </tr> </tbody> </table>	국가	지역	운영	중국	상해	8개국 11개소	청도	홍콩	미국	LA	뉴저지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니	자카르타	프랑스	파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3)
		국가	지역	운영																																											
중국	상해	7개국 10개소																																													
	청도																																														
	홍콩																																														
미국	LA																																														
	뉴저지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니	자카르타																																														
국가	지역	운영																																													
중국	상해	8개국 11개소																																													
	청도																																														
	홍콩																																														
미국	LA																																														
	뉴저지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니	자카르타																																														
프랑스	파리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24.11월 예정)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신설	<p>◆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20개 (FR-5-3 추가)</p> <p>①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추가</p>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p>	<p>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하반기 시행 예정)</p>
			<p>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p>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 5개 종류의 수산종자 생산업(허가):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뱃줄식·말목식·땃목식	<p>◆ 허가종류 확대: 기존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뱃줄식·말목식)+해상축제식</p>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p>	<p>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5.1.1.)</p>
			<p>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83)</p>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사태예측정보 예비경보 추가	◆산사태예측정보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예측정보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 (참고) 산림청 누리집 보도자료)2024년도 산사태 방지대책 발표	산림보호법 시행령 (24.6월 공포 시)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042-481-884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 고시 및 행정지침 근거	◆목재이용법 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범위 • 수집허가·증명 절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 지정 • 사법경찰권 부여 • 벌칙조항, 과태료 부과 등 ※ (참고) 산림청 누리집 보도자료) 목재이용법 개정	목재이용법 (24.7.24.)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9)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 (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100% • (물류터미널·물류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50% 또는 100%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100% • (공기업 등이 설치하는 공익 사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50% • (광물의 채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100%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단독주택의 신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 (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 (물류터미널·물류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 (공기업 등이 설치하는 공익사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 (광물의 채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단독주택의 신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준보전산지 100% <p>☞ (참고)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보도자료>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p>	<p>산림관리법 시행령 (‘24.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별 공시지가 반영비율 축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산정기준인 단위면적당 금액의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1,000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별 공시지가 반영비율 축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산정기준인 단위면적당 금액의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1,000분의 1 <p>☞ (참고)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보도자료>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p>	<p>산림청 고시 (‘24.7.1.)</p>
			<p>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p>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	<p>◆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자,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자 • (특화교육) 협준한 지형에서 다양한 산림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국 후 특화훈련 의무화” <p>☞ (참고)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 산림일자리<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p>	외국인고용법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시 (23.12.1.)
			산림청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042-481-1851)
보전국유림 내 양봉 가능토록 규제 완화 및 세부기준 신설	◆ 보전국유림 내 양봉(벌통설치) 목적의 사용허가 불가	<p>◆ 보전국유림 내 양봉(벌통설치) 목적의 사용허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통, 채밀기 등 설치가능한 간이 시설물 기준 추가 신설 <p>☞ (참고) 산림청 누리집 <알립니다> 국유림 내부·사용허가 안내</p>	국유림법, 국유림법 시행령 (24.7.3.)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농촌진흥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기반 농업기술상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대상 전화상담 • 전문가 활용 농업인 전화 전문상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대상 전화상담 +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를 통한 사전 상담 시행 • AI기반 농업기술상담서비스 미해결 사항은 전화 전문 민원상담을 통해 해결 <p>☞ (참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전문포털 사이트 농사로 (www.nongsaro.go.kr)에서 제공</p>	해당 없음 (24.9.3.)
			농촌진흥청 고객지원 담당관실 (063-238-0581) 데이터정보화 담당관실 (063-238-0479)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All in one Care'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농직접수리 가능한 고장도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소(A/S센터)를 이용하여 고장 수리 • 농업기계 수리·정비에 대한 정보 불균형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결 가능한 수리도 사후관리업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 • 농업기계는 기종이 다양하고 회사별 정비·수리 방식이 달라 긴급 고장 시 농작업 지연 및 농기계 수리비 발생으로 농업생산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원스텝 정비서비스(All in one Care) 제공 • QR코드를 활용하여 농업기계 수리·정비 동영상과 바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직접 수리가 가능한 경정비(소요품, 오일류 교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 농업기계 수리정비 비용 절감 및 농업현장에서 긴급 수리가 가능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해당 없음 (24.12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5)

농촌진흥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형과 악술형이 혼합된 시험 ◆ 1차 시험 면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 되는 제1차 시험을 1회 면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시험 ◆ 1차 시험 면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p>☞ (참고)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누리집</p>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6.21.)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22)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75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14(전 지역), 전남 17(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화순, 강진, 무안, 영광, 해남, 고흥), 경남 16(하동, 함양, 거창, 사천, 산청, 의령, 진주, 함천, 고성, 통영, 함안,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밀양), 경북 18(의성, 고령, 구미, 군위, 경산,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청도, 청송, 칠곡), 충북 5(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충남 2(천안, 아산), 경기 2(평택, 안성), 강원 1(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110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14(전 지역), 전남 17(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화순, 강진, 무안, 영광, 해남, 고흥), 경남 16(하동, 함양, 거창, 사천, 산청, 의령, 진주, 함천, 고성, 통영, 함안,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밀양), 경북 18(의성, 고령, 구미, 군위, 경산,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청도, 청송, 칠곡), 충북 11(전 지역), 충남 15(전 지역), 경기 9(평택, 안성, 광주, 수원, 양 평, 여주, 용인, 이천, 화성), 강원 7(영월,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홍천, 횡성), 특·광역시 3(세종, 대전, 광주)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농장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확대</p>	해당 없음 (‘24.12.1)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063-238-2518)

09 국방·병무

국방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병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지원절차(수기) • (예약) 관련 증빙서류 출력 후 현장에서 발권 • (정산) 매년 5만여건(25억 원)의 서류를 스캔하고 비교하여 정산(40일 이상 소요) • (개인정보) 수기문서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지원절차(전산, 앱) • (예약) 이용내역 작성 후, 개인 스마트폰 활용 예약 • (정산) 입력된 전산정보를 통해 집행 내역 확인 후 신속한 정산 가능 • (개인정보) 암호화된 전산 정보로 보관 	수송운영지시 (‘24.11월)
			국방부 단약수송관리과 (02-748-5743)

국가보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제대군인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적응 지원 •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p>☞ (참고) 국가보훈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p>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2)

병무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 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 실시	◆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 자, 모집병 지원자전원에 대해 입영 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법 (‘24.7.1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한 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 ☞ (참고) 관련법령: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사법 경찰직무법」 제5조제41호, 제6조제38호	사법경찰 직무법 (‘24.7.17.)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2)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카투사 모집 시기 • (지원서 접수) 9. 14. ~ 9. 20. • (공개 선발) 11. 2.	◆ 모집 시기 2개월여 당김 • (지원서 접수) 7. 5. ~ 7. 11. • (공개 선발) 9. 3. ☞ (참고) 병무청 누리집(보도자료)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제도 개선 (‘24.7월)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3)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운영	◆ 울산, 창원, 의정부에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추가 설치	제도 개선 (‘24.7월)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22)

병무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 지원 시마다 구비서류 제출	◆ 기존 제출서류 재사용 가능	제도개선 (*24.6.27.)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19)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체육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체육회 등 가맹단체의 등록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단체의 등록선수 해외 활동 중인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 병적 별도관리대상인 체육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체육회 등 가맹단체의 등록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단체의 등록선수 해외 활동 중인 전·현직 국가대표선수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의 등록선수 	병역법 (*24.8.7.)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891)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 피해 시 이동근무 조치 근거 마련	◆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 발생업체 인원배정 제한 	◆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 발생업체 인원배정 제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조치 	병역법 (*24.7.10.)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1)

※ (참고) 관련법령: 「병역법」 제23조
의5 제3항

방위사업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가공 및 수 입·판매 금지	◆ 방위사업법 신설	<p>◆ 방위사업법 ('24.7.17. 시행)</p> <p>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p>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제6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방위사업법 ('24.7.17.)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843)
미래국방기초기술 개발사업 신설	-	<p>◆ 국가R&D 성과 등을 활용하여 국방 기술을 획득하는 신규 R&D사업 추진</p> <p>• 국방기술기획서 및 군 수요에 기반한 연구주제 발굴, 국가연구개발 체계 아래 국방연구개발 관리방식을 적용한 협업 시스템 적용 등</p>	<p>해당 없음 ('24.7.1.)</p> <p>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6)</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장치 간 연결 의무화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 신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가 여러 피해자지원 기관에 각각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 • 피해자의 시간·비용 증가, 불편함 초래 • 한 기관에서 한 가지 유형의 지원만 가능 ◆ 다른 피해자지원 기관 연계시, 물리적 장애요인 상존 •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연계의뢰서를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받음 • 피해자의 시간·비용 소모 최소화 및 편의성 증진 •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경제·심리·교육·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 ◆ 물리적 장애를 없애 피해자지원 기관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가능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기관 간 상시적인 대면 협의 및 사례관리가 수월해져 맞춤형 지원 가능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43)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용 마약류 예방 지원단 운영	◆ 의료용 마약류 예방 지원단 부재	◆ 의료용 마약류 예방 지원단 위촉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정본부 및 내·외부 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 개선 	- (24.하반기)
			법무부 의료과 (02-2110-3388)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자원대상 확대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한하여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해외진출 및 수출 관련 법률자문 무료 제공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 지식재산권 등 해외진출 및 수출 관련 법률자문 무료 제공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령/자료) 행정예고)「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 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24.7.1.)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02-2110- 3665)
출생통보제 도입	◆ 해당 없음	◆ 출생통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4. 7. 19.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행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 (용도)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인감증명법시행령 §13 (*24.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1통당 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를 통한 발급 시 무료 <p>☞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 보도자료 >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p>	인감증명법시행령 §19 (*24.9.30.)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무료) • IC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IC 칩 비용 5,000원 부담) <p>☞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p>	주민등록법 시행령 §36, §40, §40의3* (*24.12.27.)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5.31.~7.10.)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p>◆ 무역항 항만시설의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드론 비행 가능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2조</p>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4.7.24.)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먼 바다에서도 선박운항 중 안전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서비스 도입	◆ 짧은 문자형태의 안전정보 제공	<p>◆ 실시간 라디오 서비스를 통해 해양안전정보 제공</p>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11월, 잠정)</p>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1.30)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3)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	◆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및 국민안심해안 실행 방안 마련 착수 (‘23.-)	<p>◆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 설계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안심해안 사업대상지 선정 등 실행 방안 마련</p> <p>☞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국민안심해안 보도자료(‘23.2.27)</p>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p>◆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이 통항하지 않은 해안가를 포함하여 설정 중 	<p>◆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이 통항하지 않은 해안가를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에서 제외 <p>☞ (참고) 국무조정실 누리집> 보도자료>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p>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4.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 • 등록시기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 • 다음 해 3월 말까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4.7.1.)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호 검증 체계 •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 시 신고서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호 검증 체계 강화 •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신고서 제출 가능 	(‘24.8.2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2신고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 가능 • (행정처분) 거부·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2신고처리법 (‘24.7.3.)
			경찰청 치안상황과 (02-3150-2646)

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12신고에 대한 조치	◆ 신설	◆ 피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장 등은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명령 가능 (행정처분) 피난명령 위반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2신고처리법 (24.7.3.)
			경찰청 치안상황과 (02-3150-2646)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신설	◆ 거짓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 금지 (행정처분) 거짓신고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법령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 (24.7.3.)
			경찰청 치안상황과 (02-3150-2646)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 면허제도 도입	◆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라도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 경과(2~5년) 후라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 가능	◆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 가능 ※ (참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제34호, 제50조의3, 제73조제6항, 제80조의2, 제82조제2항제10호, 제85조의2, 제93조, 제148조의3, 제152조제1호의2, 제160조제1항제9호시행 2024.10.25.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24.10.25.)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3) 교통안전과 (02-3150-2309)

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카드정보 등 추적을 위한 영장 발부가 필수, 시간 소요로 골든타임 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 없이 협조요청만으로 CCTV, 카드정보 등 요청 및 제공, 신속 추적 예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요청 및 제공을 위한 법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2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 신설 ※(참고) 법령정보센터 누리집 > 실종아동법 검색 > 번호 2 [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음 ◆ 성명·사진·주소·주민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24.7.3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9)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등 금지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부정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부정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24.9.20.)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3)

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동차 등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 신규 도입	<p>◆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p> <p>☞ (참고) 국가법령센터 누리집 「도로교통법」 법률 제20270호</p>	도로교통법 (*24.8.14.)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3)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	◆ 신설	<p>◆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 • (행정처분)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참고) 하위법령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통합입법예고 >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p>	경비업법 (*24.8.14.)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 부과	◆ 신설	<p>◆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시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참고) 하위법령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통합입법예고 >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p>	경비업법 (*24.8.14.)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소방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p>◆ 차량용소화기 비치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p>※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p>	<p>◆ 차량용소화기 비치의무 확대 (24.12월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p>※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p> <p>☞ (참고) 소방청 누리집 > 소방서식 > [보도자료]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p>	소방시설법 (24.12.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 강화	<p>◆ (주배관)</p> <p>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p> <p>◆ (송수구)</p> <p>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 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p>	<p>◆ (주배관)</p> <p>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p> <p>◆ (송수구)</p> <p>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p>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2) (24.7.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해양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시스템 부재로 인한 타기관 시스템 공동사용 • 해양 특성 반영 부족으로 인한 실무 혼선 • 전문 해양 통계 관리의 한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차세대 KICS •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 각종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플랫폼 개발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스톱 사건조회 -수사 관련 서류 접수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모바일 현장조사 	형사절차전자문서법 (*24.10.2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032-835-2229)
해양 관련 범인 검거 신고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관련 범인검거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근거 부재 • 경찰청장만 검거보상금 지급 ◆ 부정지급 손실보상, 검거보상금 환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 해양 관련 범죄검거 보상금 지급 • 해경청장도 검거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경청장, 지방해경청장, 해양 경찰서장이 보상금 지급 -부정지급 검거보상금 환수 가능 ◆ 부정지급 손실보상, 검거보상금 환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경청장, 지방해경청장이 보상금 환수 가능 -보상금 지급내역 해양경찰 위원회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24.9.2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032-835-2606)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높이 30미터 이상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상 최고 높이 (다음 표에 따른 구역의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규정 (*24.7.9. 시행 예정)

해양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다.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역</th> <th>교량</th> <th>수면상 높이 신고 기준(m)</th> </tr> </thead> <tbody> <tr> <td>군산광역시</td> <td>동백대교</td> <td>15</td> </tr> <tr> <td>목포광역시</td> <td>목포대교</td> <td>45</td> </tr> <tr> <td rowspan="2">평택 당진항</td> <td rowspan="2">서해대교</td> <td>주경간</td> <td>62</td> </tr> <tr> <td>주경간 이외</td> <td>45</td> </tr> <tr> <td rowspan="4">인천항</td> <td colspan="2">인천대교</td> <td>50</td> </tr> <tr> <td colspan="2">영흥대교</td> <td>18</td> </tr> <tr> <td colspan="2">송학-포스코 (C 송전선로 (북항 관공선부두-북항 5부두 구간))</td> <td>52</td> </tr> <tr> <td colspan="2">신시흥-영종 송전선로 (영종도-선재도 구간)</td> <td>24</td> </tr> <tr> <td rowspan="2">경인항</td> <td colspan="2">영종대교</td> <td>30</td> </tr> <tr> <td colspan="2">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td> <td>15</td> </tr> <tr> <td rowspan="2">여수-광양항</td> <td colspan="2">이순신대교</td> <td>60</td> </tr> <tr> <td colspan="2">모도대교</td> <td>40</td> </tr> <tr> <td rowspan="2">울산항</td> <td colspan="2">울산대교</td> <td>55</td> </tr> <tr> <td colspan="2">신울산-영남 송전선로 (매암부두-청량포호인구간)</td> <td>40</td> </tr> <tr> <td rowspan="2">부산항</td> <td colspan="2">부산항대교</td> <td>60</td> </tr> <tr> <td colspan="2">마창대교</td> <td>60</td> </tr> <tr> <td rowspan="3">마산항</td> <td rowspan="2">가가대교</td> <td>가재-저도구간</td> <td>32</td> </tr> <tr> <td>저도-중죽도구간</td> <td>47</td> </tr> <tr> <td colspan="2">가조연륙교</td> <td>18</td> </tr> <tr> <td rowspan="2">통영연안</td> <td colspan="2">연화도-우도 부도교</td> <td>20</td> </tr> <tr> <td colspan="2">산양 배전선로 (육지도-하노대도 구간)</td> <td>23</td> </tr> </tbody> </table>	구역	교량	수면상 높이 신고 기준(m)	군산광역시	동백대교	15	목포광역시	목포대교	45	평택 당진항	서해대교	주경간	62	주경간 이외	45	인천항	인천대교		50	영흥대교		18	송학-포스코 (C 송전선로 (북항 관공선부두-북항 5부두 구간))		52	신시흥-영종 송전선로 (영종도-선재도 구간)		24	경인항	영종대교		30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여수-광양항	이순신대교		60	모도대교		40	울산항	울산대교		55	신울산-영남 송전선로 (매암부두-청량포호인구간)		40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마창대교		60	마산항	가가대교	가재-저도구간	32	저도-중죽도구간	47	가조연륙교		18	통영연안	연화도-우도 부도교		20	산양 배전선로 (육지도-하노대도 구간)		23	<p>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685)</p>
구역	교량	수면상 높이 신고 기준(m)																																																																									
군산광역시	동백대교	15																																																																									
목포광역시	목포대교	45																																																																									
평택 당진항	서해대교	주경간	62																																																																								
		주경간 이외	45																																																																								
인천항	인천대교		50																																																																								
	영흥대교		18																																																																								
	송학-포스코 (C 송전선로 (북항 관공선부두-북항 5부두 구간))		52																																																																								
	신시흥-영종 송전선로 (영종도-선재도 구간)		24																																																																								
경인항	영종대교		30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여수-광양항	이순신대교		60																																																																								
	모도대교		40																																																																								
울산항	울산대교		55																																																																								
	신울산-영남 송전선로 (매암부두-청량포호인구간)		40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마창대교		60																																																																								
마산항	가가대교	가재-저도구간	32																																																																								
		저도-중죽도구간	47																																																																								
	가조연륙교		18																																																																								
통영연안	연화도-우도 부도교		20																																																																								
	산양 배전선로 (육지도-하노대도 구간)		23																																																																								
관제구역 확대를 통한 선박안전관리 강화	<p>◆ 제주해역 통항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기존) 896km²</p> <p><AS-IS>제주항VTS 관제구역 : 896km²</p> 	<p>(확대) 7,804km²</p> <p>※ 서울면적의 약 13배</p> <p><TO-BE>제주광역VTS 관제구역 (안) : 7,804km²</p> 	<p>'24.6~8월 (시범운영)</p> <p>'24.9.1. (정식운영)</p> <p>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아래 유형의 기업결합은 신고대상 ① PEF 설립 ② 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1/3 미만 겸임 ③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4가지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설계하여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시정 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p>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8.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기술유행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 산정 등 입증에 곤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① 피해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기술유행행위를 하게 한 목적물 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행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2)</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1. 그 목적물 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피해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 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 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 등의 규모를 피해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p> <p>2. 그 목적물 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피해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 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 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p> <p>② 피해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피해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함</p> <p>③ 피해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함</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음</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시행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 신설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 (법 개정) 필수품목의 항목 및 가격산정방식 • (시행령 개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7.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4(예정))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 신설 -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일반적으로 변경 후 통지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4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 신설	◆ 용량 등 변경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로 규정 - (별표1)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공식품,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 (별표2) 중요사항 변경사실 미고지 행위 및 고지방법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24.8.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허가 및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병행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생략) ①~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생략) ①~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4.4.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변경	제4조(산출방법) (생략) 1.(생략) 2. 경력산출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3.(생략)	제4조(산출방법)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3.(현행과 같음)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4.4.29)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적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24.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7)